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 일시 | 2018. 5. 3. (목) 14: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이경숙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가족을 떠나 가장 처음 마주하는 사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고, 또한 학생들이 학교를,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믿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사회에서 #미투 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 #스쿨미투 또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아직 인격형성시기에 있으며, 이 시기의 학생들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이 시기에 학생들의 경험은 모두 이러한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장소인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어떠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해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학생 10명 중 3명이 학교에서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들과 함께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사회구성원으로서 성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일 없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들은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며,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삶을 펼쳐 나갈 무대인 우리 사회를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학생들을 성폭력 피해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정책방향을 탐색하는 다채로운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들, 또한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토론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성폭력으로 고통 받은 모든 피해자 학생들의 피해가 치유되고,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폭력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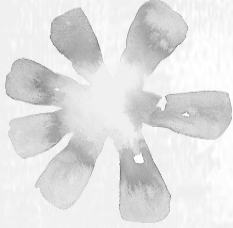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이경숙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 일시 : 2018. 5. 3. (목) 14: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

사회 :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진행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시간	내용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이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장)
14:10~14:25	〈사례발표〉 •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과 이래도 되는 사람” 이기 (아수나로)
14:25~15:05	〈실태조사 결과발표〉 •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05~15:20	휴식
15:20~16:20	〈지정토론〉 • 김애라 (서강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대우교수) • 박하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주임교수) •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 윤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 노형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16:20~16:50	〈전체토론〉
16:50~17:00	〈정리 및 폐회〉



차례

CONTENTS

[사례발표]

-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과 이래도 되는 사람” _ 9
이기 (아수나로)

[실태조사 결과발표]

-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_ 15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_ 53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 김애라 (서강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대우교수) _ 71
- 박하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주임교수) _ 74
-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_ 80
- 윤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_ 84
-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_ 91
- 노형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_ 96

[사례발표]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과 이래도 되는 사람”

이기
(아수나로)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과 이래도 되는 사람”

이기 (아수나로)

10년 동안 학교에 다녔다. 평소 공부에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던 나는 초등학교를 나와 인문계 중학교에 다녔다. 학교에 다니는 10년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있었다. 친구 간의 다툼, 교사와 학생 간의 다툼, 왕따라고 불리는 따돌림 그리고 항상 뉴스 한 칸을 자치하고 있던 성희롱 사건들이 그것들이다. 이 글을 빌어 내가 말해보고자 하는 것은 성희롱 중에서도 교사에 의한 성희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느냐고, 그런 일은 “이상한” 한 사람이 벌이는 일뿐이라고 말하고는 한다. 과연 그럴까? 나는 여성·청소년으로서 수없이 많은 성희롱 사건들을 겪고 들으면서 학교를 버텼다. 그럼 나는 한두 명 있을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학교에 다니더라도 한 것일까? 나는 거창한 법이나 통계, 이론을 통한 이야기는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한두 명의 단지 “이상한” 사람일 수 있을까?

내가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의 나는 몸에 살집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살았던 때기도 한다. 교사들은 항상 나에게 “애, 잘 낳게 생겼네.”라고 말하고는 했다. 그렇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이 내가 착해서 듣는 칭찬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칭찬으로 착각하고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에서는 교복 변형 금지 규정이 있었다. 치마 밑단이 뜯어졌는지 안 뜯어졌는지 확인하려 학생들을 일렬로 세워두고 치마를 들쳐서 검사했다는 남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 화장하고 틴트를 바른 내 친구는 지나가던 교사에게 “입술이 왜 그렇게 빨갛냐. 쥐 잡아먹었니 아니면 술집 여자냐.”라는 투의 소리를 들으며 별점을 먹었다. 기가 시간에 친환경 식생활을 배우던 중에는 기가 교사가 “너희는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너희는 나중에 좋은 씨앗을 품을 받아 될 몸이기 때문이다.” 라거나 “너네는 나중에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다. 이런 발언들은 놀랍게도,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들이 아니다. 그 학교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3년 전반에서 들을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학교가 특출나게 그런 것이 아니냐고 생각

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학교에 다녔던 내 친구의 이야기를 대신 옮겨본다. 내 친구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2주 동안 학교에 다녔다. 그 후에는 개인 사정으로 자퇴를 했지만, 그 친구가 2주 동안 학교에서 들은 성희롱 발언들을 듣고 나는 기함할 수밖에 없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규정을 말해주며 “사실, 너희 치마 짧으면 나아 좋지.”라고 말한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함을 했다. 그것 외에도 수업시간 중에 교사에게 “졸업생 중 가슴 큰 언니가 포옹을 해주는 게 좋다.” “여학생들이 바지 입으면, 안 예쁘다. 너희 살도 찼는데, 치마 입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들었다고 했다. 내 친구는 지금은 자퇴한 상태이지만, 아직도 그 학교 안에는 교문을 넘지 못한 성희롱들이 만연할 것이다. 놀랍게도 “이상한” 한두 사람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만연하다. 성희롱이 교문을 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성희롱이고 성희롱 발언인지 모를 정도로 일상이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식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주위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성희롱들이 교문을 넘지못한 다른 또 하나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싫으면 말을 했어야지”

이런 말은 피해자를 계속 따라오는 낙인과도 같다.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싫으면 말을 하고 거절을 했어야지.”라며 피해자를 탓하는 말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다. 탓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사건의 책임을 묻는다. 학교는 굉장히 위계적인 현장이다. 학내의 권력 관계는 교사에서 학생으로 학생 안에서는 학년으로 수직으로 내려온다. 그 안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한 가해에 대해 학생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교사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목소리는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다. ○○여고 몰래카메라 사건을 봐도 알 수 있다. 사건에 대하여 공론화 하려 하자 생활기록부로 협박하여 무마하려 들었다. 이런 일이 ○○여고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활기록부 협박, 학교 명예 등을 운운하며 무마하려 드는 수작들을 이겨내도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학교는 위계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 위계가 강한 곳에서는 전체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공격한다. 위계가 강한 사회는 그런 목소리로 인하여 환경이 변하고 위계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곳에서는 목소리를 내려 시도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설령 목소리를 낸다 해도 공격을 받을 것이고 주변은 그런 사례들을 습득하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 바로 이런 공간인 학교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큰 용기를 내도 시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말에 학내대응을 했다. 위에 있는 기가 교사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며, 페미니즘 포스트잇 캠페인을 시작했고, 나는 나와 같이 혐오 발언을 들으며 생활한 사람들은 공감해줄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래도 선생님인데 너무하다.” “왜 우리까지 피해받게 그러느냐”라며 포스트잇을

[사례발표] “한두 명의 이상한 사람과 이래도 되는 사람”

칼로 찢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것처럼 목소리를 내기도 힘든 공간이며, 목소리를 내어도 공격을 받기 십상인 공간에서 어떻게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것이 주변에 잘 알려지지 못한 성희롱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성희롱 발언이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고,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 성희롱을 한 교사가 학생을 동등한 사람으로 봤다면 그런 이야기가 할 수 있었을까? 아마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였다고 해도 기분 나쁨을 내비쳤다면 사과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학교는 어 떠한가. 기분 나쁨을 내비치면 되레 화를 내며, 생활기록부 협박을 내세우고 성희롱은 여전히 만연한 현장이다. 현장을 바꾸고, 동등한 사람으로 청소년을 보는 것이 학내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¹⁾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배경

- 본 발표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인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중 일부이다.
-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는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 문제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의 대책을 발표하고 학교 내 교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문제 상황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해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정책권고 사항을 제안하고자 추진되었다.

〈표 1-1〉 연구 개요

<p>□ 연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선행연구 결과 정리 - 초·중·고 성희롱 관련 법적·제도적(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운영현황 분석 - 초·중·고 성희롱 사건 결정례 분석 - 초·중·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분석 - 초·중·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 분석 -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 관련 정책권고 제안 <p>□ 연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결정례 및 진정사례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례 등 - 설문조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남학생 1,000명 대상 온라인 조사 - 면접조사: 교육청 관계자, 학교 내 일반교사, 보건교사, 경찰, 청소년단체 관계자(청소년 활동가 포함) 등 -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 운영

1) 본 원고는 황정임·박선영·윤덕경·장명선·동제연·고현승(2017),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 중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임.

II 조사결과

1. 설문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1) 조사대상²⁾

본 조사의 응답 대상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하였다. 표본크기는 가용 예산과 조사 소요 기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1,000명으로 결정하였다. 1,000명 조사 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p이다.

성희롱이 발생하는 대상이 여학생이 대부분이므로 1,000명 중에서 여학생 800명, 남학생 200명(여학생:남학생 = 4:1)으로 여학생의 추출 확률이 높아지도록 조정하였다. 최종 표본배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 층별 표본배분 결과

구분	남자				여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전국	69	63	68	200	270	263	267	800	1,000
수도권	29	27	30	86	114	112	113	339	425
충청권	19	18	18	55	74	72	73	219	274
경상권	10	7	9	26	37	36	35	108	134
전라권	11	11	11	33	45	43	46	134	167

주: 강원은 수도권, 제주는 전라권에 포함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위탁 조사회사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온라인 패널 및 협력업체의 패널 명부 중 고등학생에 포함되는 5,70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추출은 각 층 내에서 1,000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추출하였으며, 온라인 링크 3회 발송 후 응답이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랜덤하게 추출하여 대체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조사에서는 초·중·고에서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 파악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사항,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성희롱 경험,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성희롱 목격 경험 및 대응에

2) 조사설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pp.85-91)를 참고한다.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대한 의견, 학교에서의 학생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경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해 원인 및 개선에 대한 의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경험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의 성희롱 경험은 먼저 교사에 의한 성희롱 인지 여부를 질문하고, 피해 경험을 질문하고,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불쾌감이나 수치심 여부를 질문하는 3단계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II-2〉 「초·중·고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조사」 조사 항목

영역	문항	
일반적 사항	• 거주지	• 성별
	• 출생연도	• 학년
	• 고등학교 종류	• 고등학교 유형
	• 고등학교 설립유형	• 동거 가구원
	• 양성평등의식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성희롱 피해 경험	•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인지 여부(본인, 타인 포함)	
	•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본인)	
	• (피해 경험 시)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 등 경험 여부	
	• (피해 경험 시) 가해자 유형	
	• (피해 경험 시) 가해자 성별	
	• (피해 경험 시) 최초 피해 경험 시기	
	• (피해 경험 시) 최다 피해 경험 시기	
	• (피해 경험 시) 피해 당시 상황	
	• (피해 경험 시) 피해 당시 행동	
	• (피해 당시 가만히 있었거나 참은 경우) 이유	
	• (피해 당시 저항한 경우) 가해자의 반응	
	• (피해 경험 시) 가해자의 가해 행위 이유에 대한 생각	
	• (피해 경험 시)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	
	•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 도움 요청 대상	
	• (도움 요청 대상이 학교 선생님인 경우) 학교의 조치 여부	
• (학교의 조치가 있었다면) 조치 내용 및 조치에 대한 만족도		
•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 주변 반응 유형별 경험 여부		
• (피해 경험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유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성희롱 목격 경험 및 대응에 대한 의견	•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선생님에 의한 학생 성희롱 목격 경험	
	• (목격 경험 시) 보거나 들은 성희롱 피해 유형	
	• (목격 경험 시) 당시 생각	

영역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 경험 시) 당시 행동 • (목격 경험 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한 경우) 상담/신고한 기관 • 고등학교 입학 이후 선생님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공론화 된 적 여부 • (공론화 된 적이 있다면) 사건 처리의 공정성 및 본인 개입 경험 • (공론화 된 적이 없다면) 향후 사건 처리의 예상 공정성 정도 및 본인 개입 의향 • 향후 본인이나 친구가 피해 경험 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기관(또는 대상) •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에 의한 성희롱 피해 경험 시 적극 대응하기 힘든 이유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참여 경험 및 성희롱 발생원인/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 • (성희롱 예방 교육 경험 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최근 경험 기준) • (성희롱 예방 교육 경험 시) 교육의 도움 정도 • (성희롱 예방 교육 경험 시) 교육 방식(최근 경험 기준) •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별 동의 정도 • 학교에서 선생님에 의한 성희롱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시절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 중학교 시절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경험 여부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과 관련한 문항은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강제적, 분위기 등으로 세부유형을 분류하여 각 문항을 구성하였다.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를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 법률적 정의를 넘어서, 다양한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 언론기사 분석 결과, 관계자 면접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다양한 유형을 포괄하도록 초안을 구성하였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단, 조사 모집단 확보상의 제한으로 고등학생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피해 실태를 현재 시점으로 파악하는데 한계는 있다.

〈표 II-3〉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문항에 대한 세부내용

구분	문항
신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쁘다며(혹은 잘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기, 헤드 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 •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치마길이가 확인이나 속옷 착용 확인 등) •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볼,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 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 나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 • 본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청하거나, 요청에 따라 안마를 하게 된 행위
언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인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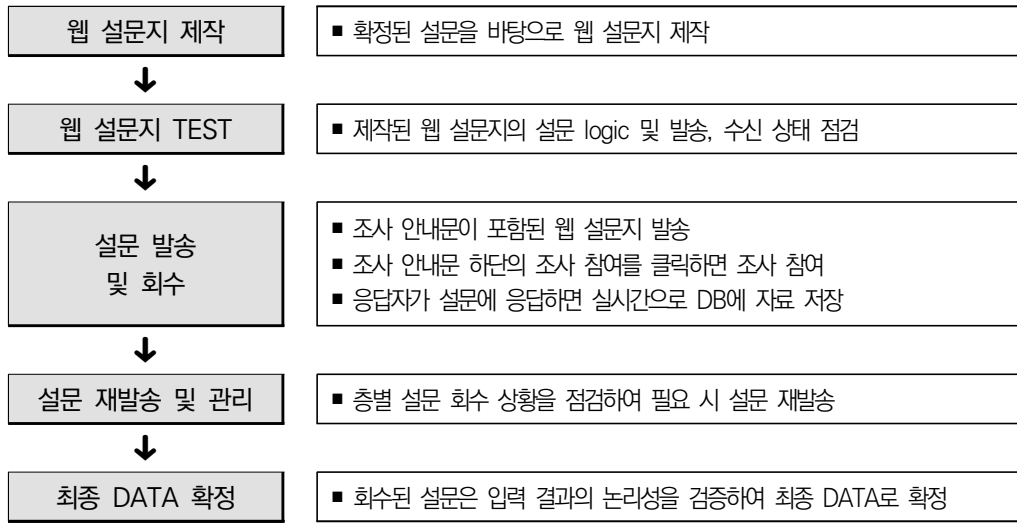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구분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 나의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 수업시간에 (암기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
시각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금슬금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 • 나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 • 나에게 컴퓨터통신이나 SNS 등을 통해 성적인 행위, 성적인 언행,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영상물 등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 나에게 성적인 비유, 성적인 언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칠판 등에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강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로 키스나 포옹을 하는 행위 • 강제로 성기를 나에게 은근히 밀착시키는 행위 • 강제로 나를 만지는 행위 • 강제로 성관계 하는 행위 • 강제로 나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 •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문자 등)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

3) 조사방법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조사가 가입된 패널을 대상으로 하므로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포함률이 낮고, 조사에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이 많이 포함되는 등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응답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혼자서 자발적으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거짓 응답이나 규범적 응답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교적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온라인 조사 프로그램 내에 내검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응답 범위 설정, 올바른 경로 이동, 무응답 제한 기능 등이 내장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성희롱 실태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과 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시도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온라인 조사 과정은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온라인 조사 과정

나. 조사결과

1) 응답자 특성

전체 응답자는 1,014명이며, 이중 여학생은 814명(80.3%), 남학생은 200명(19.7%)이었다. 학년별로는 1학년 342명(33.7%), 2학년 333명(32.9%), 3학년 339명(33.4%)이었다. 학교종류별로는 일반고가 714명(70.4%)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특목고 63명(6.2%), 특성화고 205명(20.3%), 자율고 및 기타 31명(3.1%)이었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남녀공학이면서 합반인 경우는 432명(42.6%), 남녀공학이면서 분반인 경우는 181명(17.8%), 여학교 343명(33.9%), 남학교 58명(5.7%)이었다. 남학생의 경우 200명 중 58명만이 남학교였고 나머지는 남녀공학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에 재학 중인 경우가 576명(56.8%), 사립에 재학 중인 경우가 438명(43.2%)이었다.

〈표 II-4〉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전체		1,014	100.0
권역별	수도권	518	51.1
	경상권	256	25.3
	충청권	111	10.9
	전라권	129	12.7
성별	여자	814	80.3
	남자	200	19.7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구분		사례수	%
학년별	1학년	342	33.7
	2학년	333	32.9
	3학년	339	33.4
학교 종류별	일반고	714	70.4
	특목고	63	6.2
	특성화고	205	20.3
	자율고 및 기타	31	3.1
학교 유형별	남녀공학(합반)	432	42.6
	남녀공학(분반)	181	17.8
	여학교	343	33.9
	남학교	58	5.7
설립 유형별	공립	576	56.8
	사립	438	43.2

2) 성희롱 실태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단계 방식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즉, 먼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본인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경험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질문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 성희롱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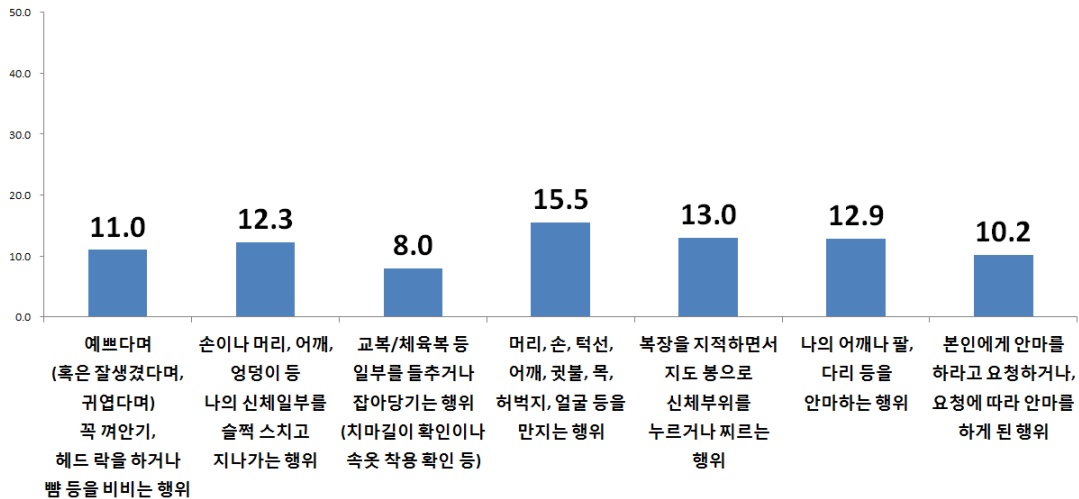
‘고등학교를 입학한 후에 현재까지 학교 선생님에 의해 성희롱 행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한 결과이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고자 25개 문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성희롱 인지율은 40.9%로, 10명 중 4명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형별로 신체적 성희롱의 인지율이 34.4%로 가장 높았고, 언어적 성희롱 21.2%, 시각적 성희롱 10.4%, 강제적 성희롱 2.4%, 분위기형 성희롱 2.2%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신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41.3%, 남학생 39.5%로 상대적으로 여학생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학년별로는 1학년 37.1%, 2학년 38.8%, 3학년 47.0%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사에 의한 성희롱 행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로는 공립 40.1%, 사립 42.1%로 사립에서 다소 높았다.

〈표 II-5〉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 성희롱 피해 발생에 인지율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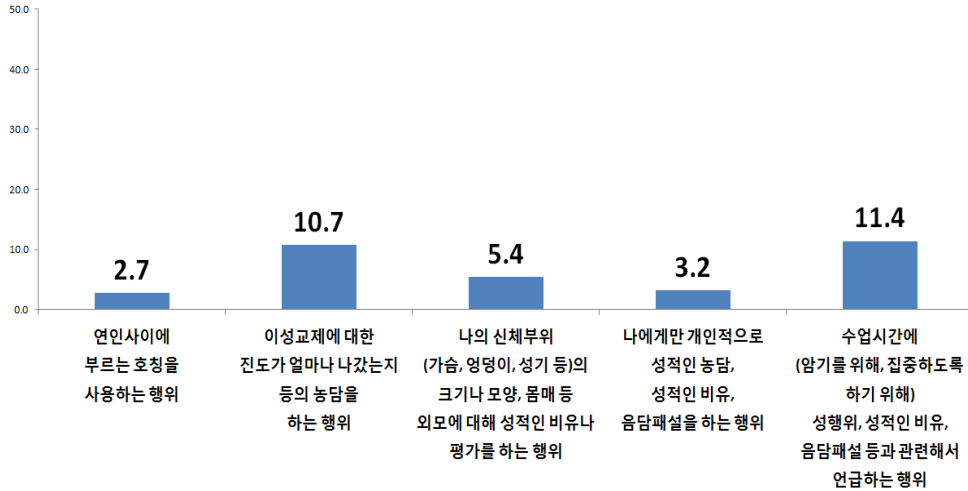
		사례수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강제적	분위기	전체 성희롱 인지율
전체		1,014	34.4	21.2	10.4	2.4	2.2	40.9
성별	여자	814	34.9	21.0	10.6	1.9	2.0	41.3
	남자	200	32.6	21.8	9.2	4.3	3.0	39.5
학년별	1학년	342	29.9	19.4	8.9	1.6	1.5	37.1
	2학년	333	32.5	21.9	10.6	2.6	2.3	38.8
	3학년	339	40.9	22.2	11.6	3.0	2.8	47.0
설립 유형별	공립	576	33.1	21.2	10.2	3.2	2.1	40.1
	사립	438	36.1	21.1	10.6	1.3	2.4	42.1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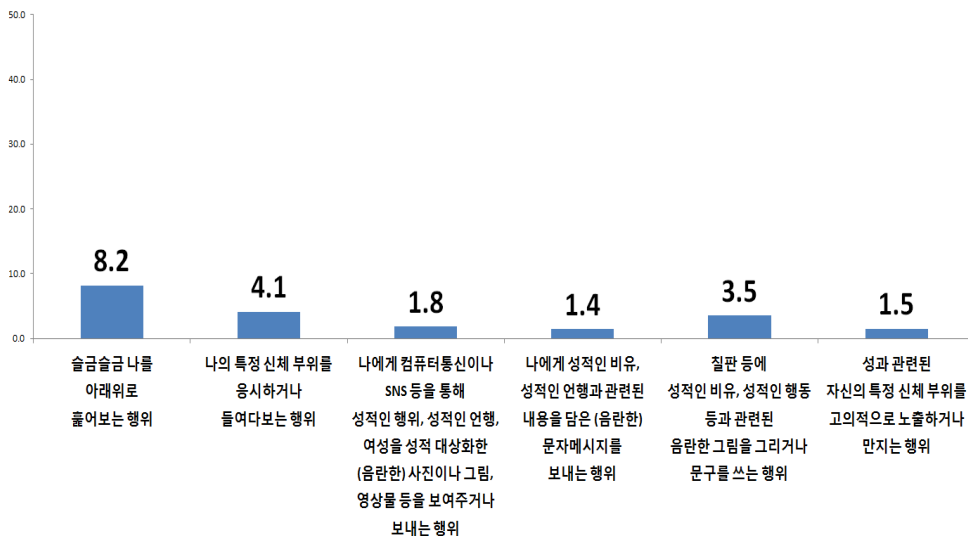
[그림 II-2]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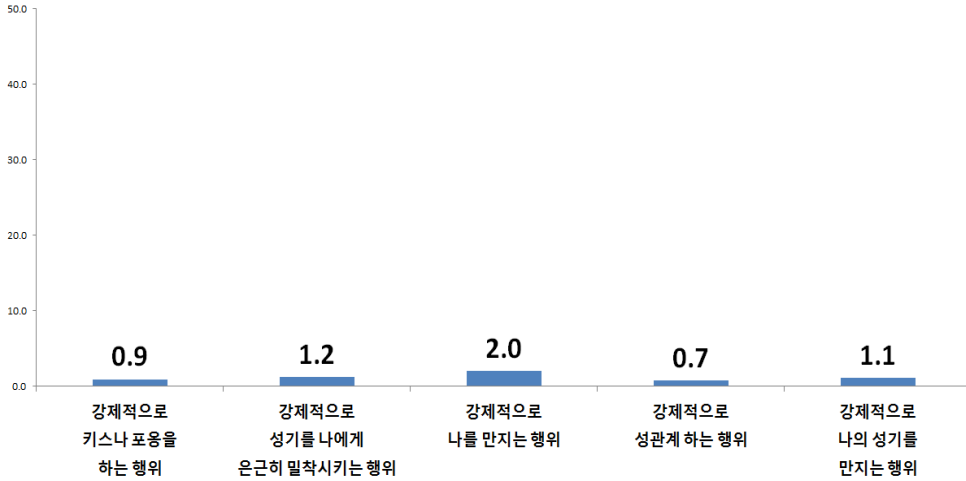
[그림 II-3]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그림 II-4]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시각적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_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그림 II-5]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강제적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그림 II-6]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분위기형 성희롱 인지율(전체 응답자)

성별에 따른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볼,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 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 ‘나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

치고 지나가는 행위’,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 ‘수업 시간에 (암기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10명 중 1명은 학교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교사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 성희롱 경험

(1) 피해 경험 여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해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문항의 결과이다. 전체 성희롱 경험률은 27.7%로, 학생 10명 중 3명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23.4%로 가장 높았고, 언어적 성희롱 9.9%, 시각적 성희롱 5.8%, 강제적 성희롱 1.2%, 분위기형 성희롱 0.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성희롱 경험률은 27.8%, 남학생의 성희롱 경험률은 27.3%였다. 여학생(23.7%)과 남학생(22.1%) 모두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언어적 성희롱에서는 여학생(9.8%)보다 남학생(10.3%)이, 시각적 성희롱에서는 남학생(4.5%)보다 여학생(6.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년별로 각 학년의 성희롱 경험률을 살펴보면, 1학년 23.3%, 2학년 28.5%, 3학년 31.4%였다. 이는 현재 학년에 기준한 것이므로 실제 성희롱 경험시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입학 이후 지금까지 경험률을 보았을 때 3학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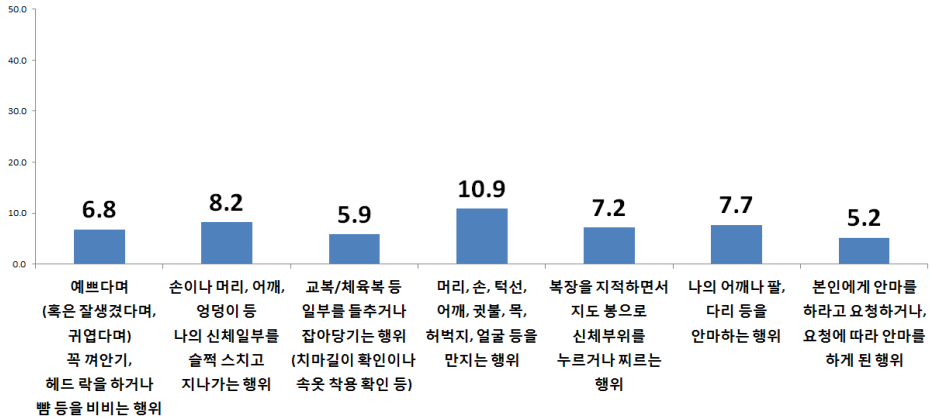
설립유형별로는 공립에서의 성희롱 경험률은 28.0%, 사립에서의 성희롱 경험률은 27.4%였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에서는 공립(22.7%)보다 사립(24.3%), 언어적 성희롱에서는 사립(9.3%)보다 공립(10.4%)에서 경험률이 높았다.

〈표 II-6〉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 성희롱 피해 경험률

(단위: 명, %)

	사례수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강제적	분위기	전체 성희롱 경험률	
전체	1,014	23.4	9.9	5.8	1.2	0.7	27.7	
성별	여자	814	23.7	9.8	6.2	1.2	0.7	27.8
	남자	200	22.1	10.3	4.5	1.3	0.4	27.3
학년별	1학년	342	19.9	7.4	4.7	1.3	0.6	23.3
	2학년	333	23.4	12.3	7.0	1.1	1.1	28.5
	3학년	339	27.0	10.1	5.9	1.2	0.2	31.4
설립 유형별	공립	576	22.7	10.4	5.7	1.3	0.5	28.0
	사립	438	24.3	9.3	6.0	1.0	0.9	27.4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_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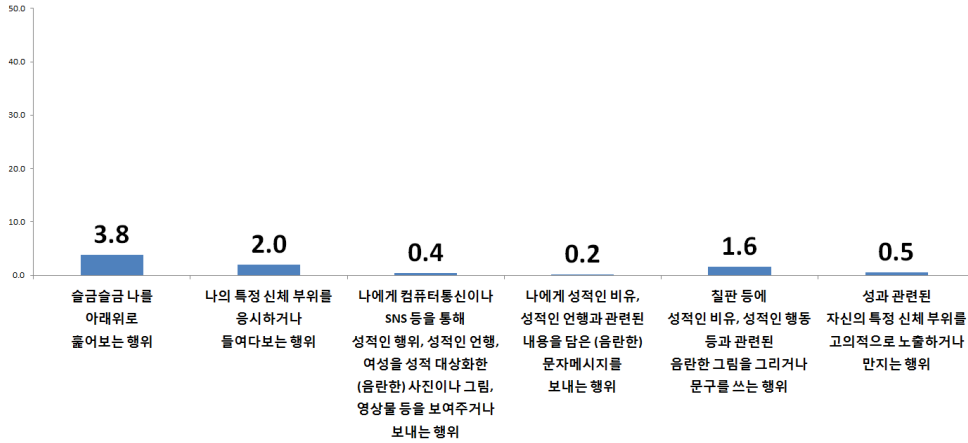
[그림 II-7]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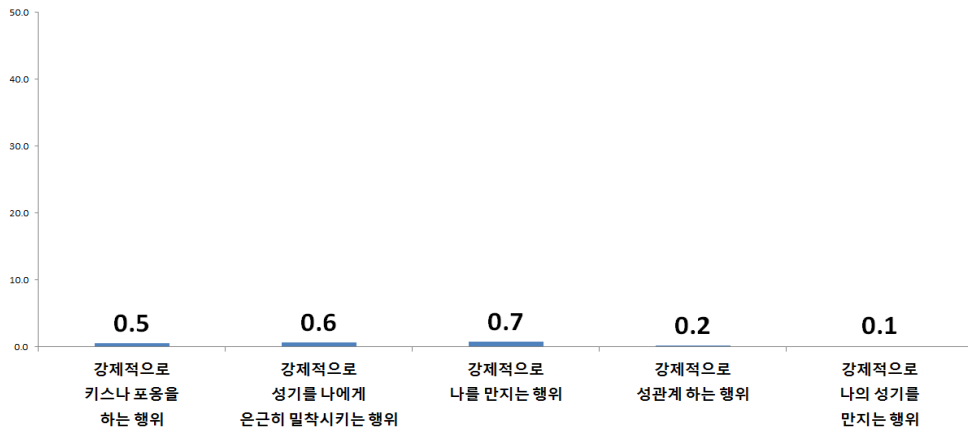
[그림 II-8]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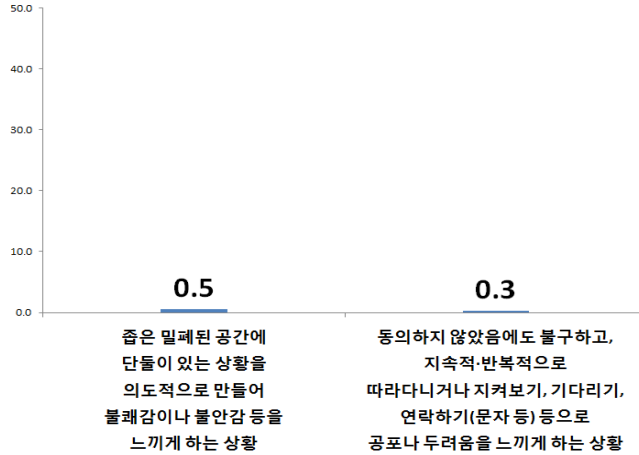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그림 II-9]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시각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그림 II-10]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강제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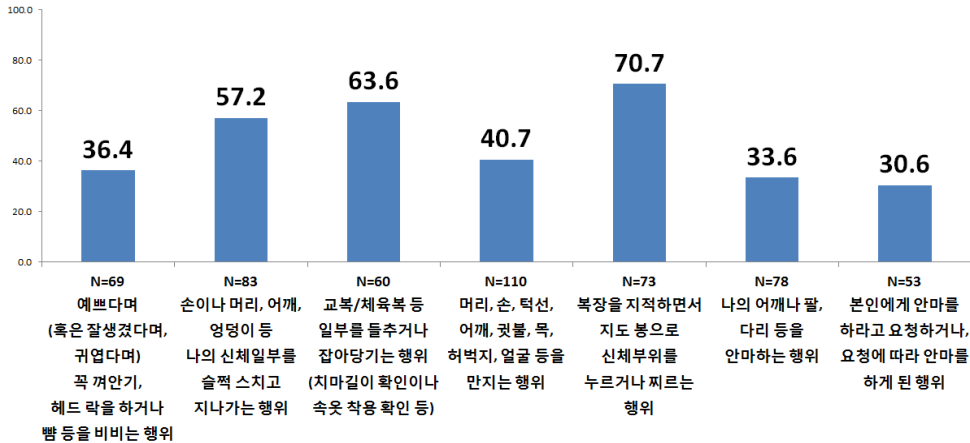
[그림 II-11]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분위기형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2) 성희롱 피해에 따른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여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해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경우, 성적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질문한 결과이다. 본인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행위에 따라 어느 정도 불쾌하고 수치스럽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모든 문항(행위)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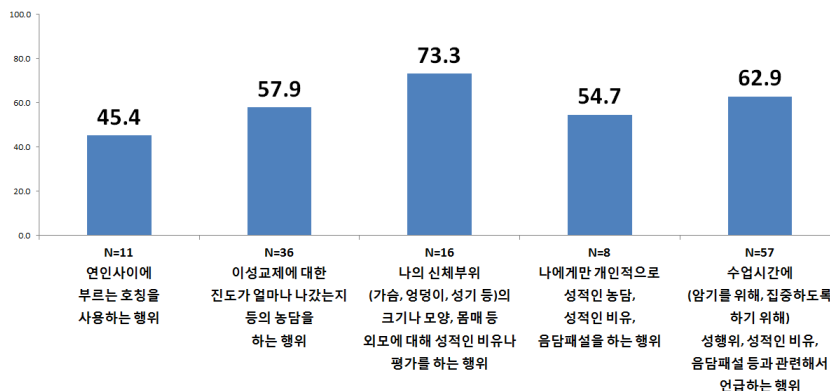
신체적 성희롱에서는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 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70.7%)’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63.6%)’,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57.2%)’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볼,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40.7%)’, ‘예쁘다며(혹은 잘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기, 헤드 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36.4%)’, ‘나의 어깨나 팔, 다리 등을 안마하는 행위(33.6%)’, ‘본인에게 안마를 하라고 요청하거나 요청에 따라 안마를 하게 된 행위(30.6%)’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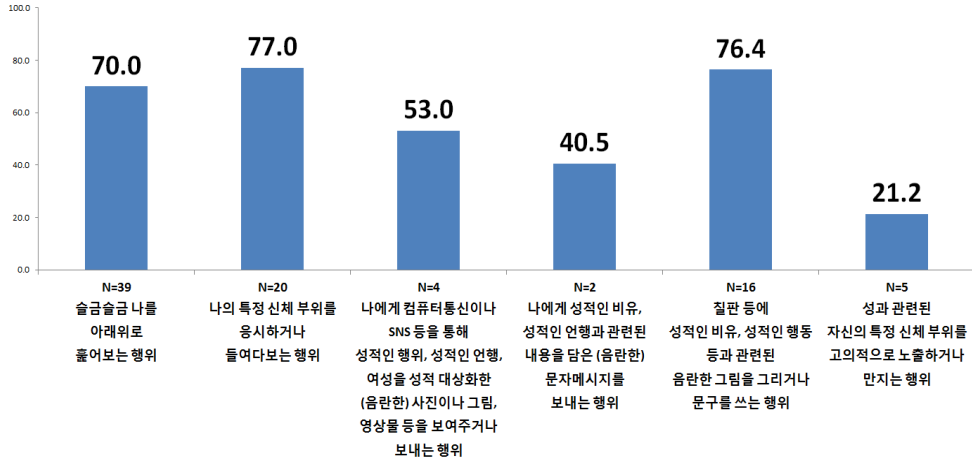
[그림 II-12]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신체적 행위)

언어적 성희롱에서는 ‘나의 신체부위(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73.3%)’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수업시간에 (암기를 위해,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서 언급하는 행위(62.9%)’,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57.9%)’, ‘나에게만 개인적으로 성적인 농담,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54.7%)’ 등 거의 모든 문항에 있어서 50%를 상회하였다. 전체적으로 신체적 성희롱과 언어적 성희롱에 대한 경험률이 높은 편인데, 신체적 성희롱 행위에서는 세부행위에 따라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반면, 언어적 성희롱에서는 세부행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고 해당행위를 경험한 2명 중 1명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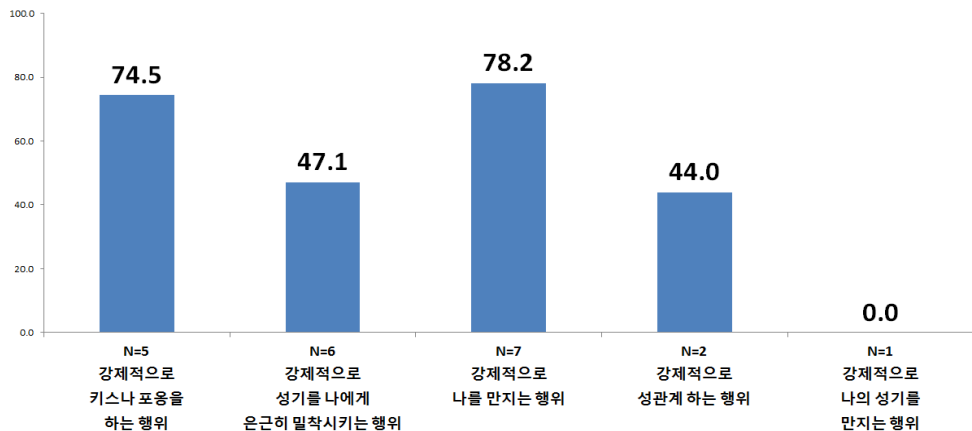
[그림 II-13]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언어적 행위)

시각적 성희롱에서는 ‘나의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77.0%)’, ‘칠판 등에 성적인 비유,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76.4%)’, ‘슬금슬금 나를 아래위로 훑어보는 행위(70.0%)’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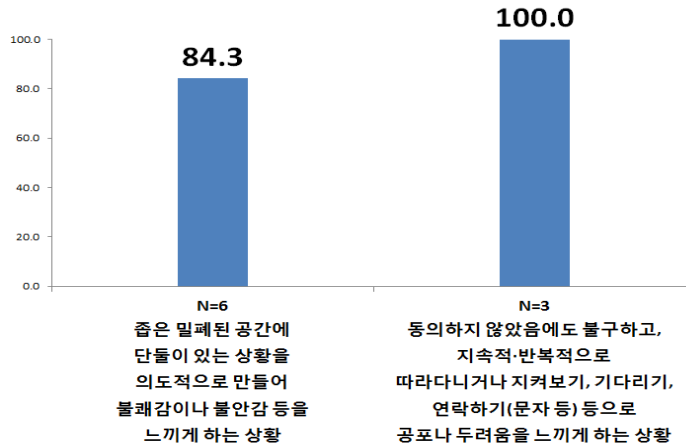
[그림 IV-14]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시각적 행위)

강제적 성희롱에서는 ‘강제적으로 나를 만지는 행위(78.2%)’, ‘강제적으로 키스나 포옹을 하는 행위(74.5%)’에서 성적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위기형 성희롱에서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경험자 전원이, ‘좁은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불쾌감이나 불안감 등을 느끼게 하는 상황’에서는 84.3%가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그림 IV-15]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강제적 행위)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그림 II-16]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 시의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경험률(분위기)

다) 성희롱 가해자

성희롱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해자(복수응답)는 교과목 교사라는 응답이 62.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담임교사 40.2%, 비교과목 교사 7.1%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의 경우 교과목 교사 66.8%, 담임교사 38.2%, 비교과목 교사 7.5% 순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담임교사 48.6%, 교과목 교사 44.0%, 방과후 교사 10.5%, 비교과목 교사 5.7% 순이었다.

<표 II-7>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해자 선생님(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담임 교사	교과목 교사	교감	교장	방과후 교사	비교과목 교사 (상담, 보건, 사서 등)	기타
전체		281	40.2	62.4	0.7	1.8	5.2	7.1	5.3
성별	여자	226	38.2	66.8	0.9	1.9	3.9	7.5	5.6
	남자	55	48.6	44.0	0.0	1.6	10.5	5.7	4.0

가해자 성별은 남성 45.0%, 여성 29.2%, 남성과 여성 모두 25.8%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남성 39.4%, 여성 33.4%, 남성과 여성 모두 27.2%였고, 남학생의 경우 남성 68.0%, 여성 11.8%, 남성과 여성 모두 20.2% 순이어서 남학생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표 II-8〉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해자 선생님 성별

(단위: 명, %)

		사례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모두
전체		281	45.0	29.2	25.8
성별	여자	226	39.4	33.4	27.2
	남자	55	68.0	11.8	20.2

라) 성희롱 경험 시기 및 상황

(1) 성희롱을 처음 경험한 시기

성희롱을 가장 처음 경험한 시기는, 1학년이라는 응답이 71.2%로 가장 높았다. 2학년은 22.4%, 3학년은 6.4%였다. 3학년에 처음 성희롱을 경험하는 경우는 극소수였고, 경험자 10명 중 7명은 1학년 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1학년 71.8%, 2학년 21.1%, 3학년 7.2%였고, 남학생의 경우 1학년 68.8%, 2학년 28.0%, 3학년 3.3%였다.

〈표 II-9〉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장 처음 경험한 시기

(단위: 명, %)

		사례수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281	71.2	22.4	6.4
성별	여자	226	71.8	21.1	7.2
	남자	55	68.8	28.0	3.3

(2) 성희롱을 많이 경험한 시기

성희롱을 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도 질문하였는데 처음 경험한 시기에 이어, 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 역시 1학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1학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9.3%였고, 2학년 29.9%, 3학년 10.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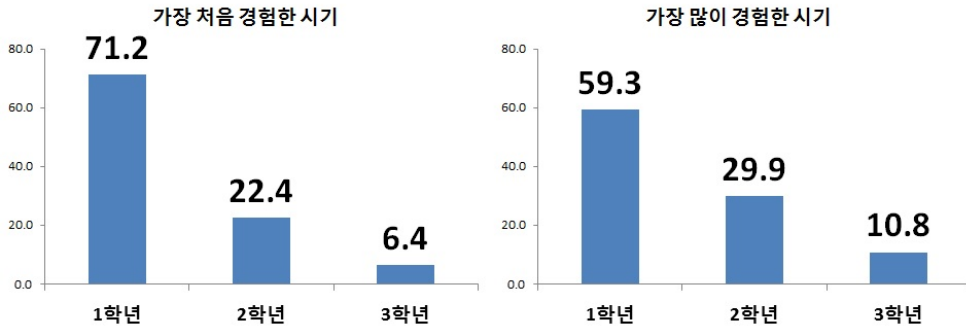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1학년 59.5%, 2학년 29.4%, 3학년 11.1%였고, 남학생의 경우 1학년 58.2%, 2학년 32.1%, 3학년 9.7%였다.

〈표 II-10〉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

(단위: 명, %)

		사례수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281	59.3	29.9	10.8
성별	여자	226	59.5	29.4	11.1
	남자	55	58.2	32.1	9.7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그림 II-17] (성희롱 피해 경험 시)가장 처음, 가장 많이 경험한 시기

(3) 성희롱 경험 당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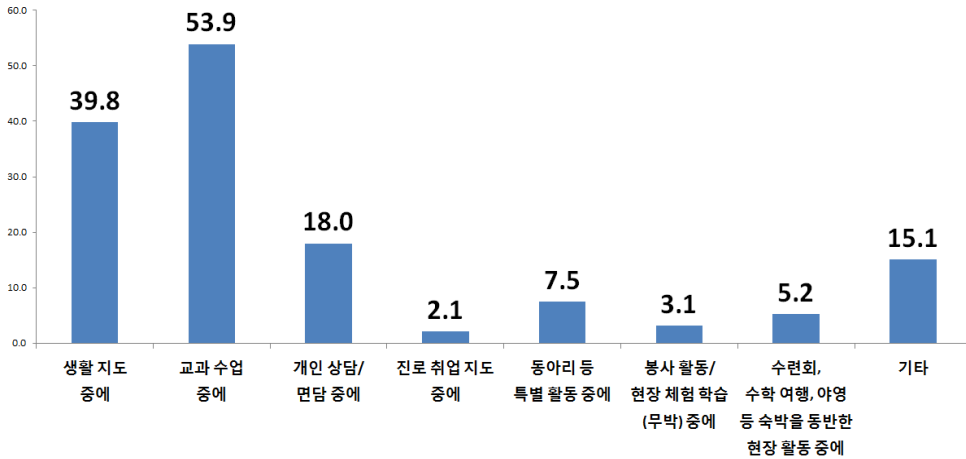
성희롱을 경험했던 당시 상황을 조사하였다(복수응답). ‘교과수업 중에’라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고, ‘생활지도 중에’ 39.8%, ‘개인상담/면담 중에’ 18.0% 순이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여학생의 경우 ‘교과수업 중에’ 53.1%, ‘생활지도 중에’ 44.0%, ‘개인상담/면담 중에’ 19.5% 순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교과수업 중에’ 56.9%, ‘생활지도 중에’ 22.5%, ‘개인상담/면담 중에’ 12.2%였다.

<표 II-11> (성희롱 피해 경험 시)피해 당시 상황(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생활 지도 중에	교과 수업 중에	개인 상담/ 면담 중에	진로 취업 지도 중에	동아리 등 특별 활동 중에	봉사 활동/ 현장 체험 학습 (무박) 중에	수련회, 수학 여행, 야영 등 숙박을 동반한 현장 활동 중에	기타
전체		281	39.8	53.9	18.0	2.1	7.5	3.1	5.2	15.1
성별	여자	226	44.0	53.1	19.5	2.6	8.0	2.9	5.5	16.0
	남자	55	22.5	56.9	12.2	0.0	5.3	3.7	3.8	11.3



[그림 II-18] (성희롱 피해 경험 시)피해 당시 상황(복수응답)

3) 성희롱 대응

가) 피해당시 상황

(1) 성희롱 경험 당시 대응

성희롱 경험 당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응답이 37.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19.8%,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 8.5% 순이었다. ‘소리를 질렀다(1.5%)’, ‘그만하라고 말했다(5.1%)’,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1.0%)’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모르는 척하거나 참았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의 응답이 66.2%로 많은 경우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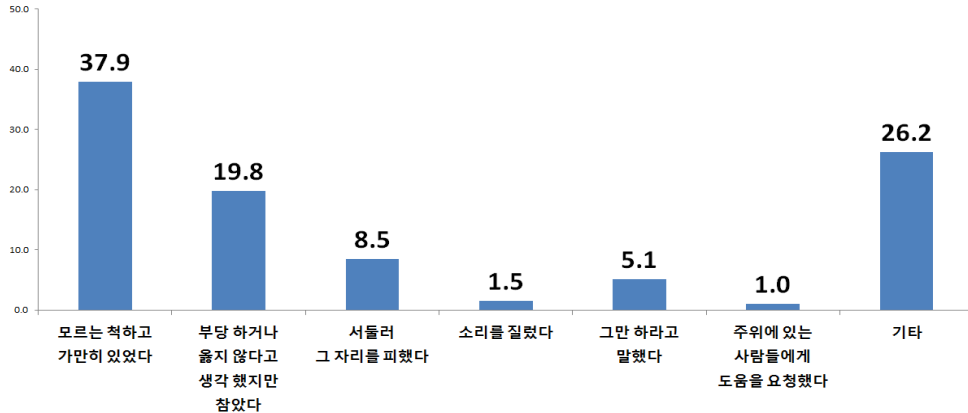
성별에 따라 여학생의 경우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 36.9%,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21.8%,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 10.6% 순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 41.9%,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11.6% 순이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에서 여학생(0.3%)보다 남학생(3.8%)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I-12〉 (성희롱 피해 경험 시)피해 당시 대응

(단위: 명, %)

		사례수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다	소리를 질렀다	그만 하라고 말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기타
전체		281	37.9	19.8	8.5	1.5	5.1	1.0	26.2
성별	여자	226	36.9	21.8	10.6	1.5	5.3	0.3	23.6
	남자	55	41.9	11.6	0.0	1.4	4.3	3.8	36.9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그림 II-19] (성희롱 피해 경험 시)피해 당시 대응

(2) 성희롱 행위를 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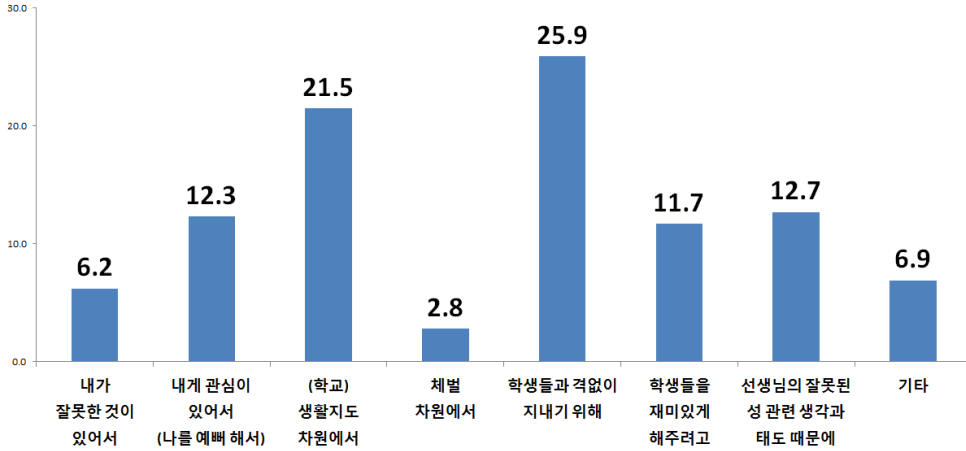
교사가 왜 성희롱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학생들과 격없이 지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5.9%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지도 차원에서’ 21.5%, ‘선생님의 잘못된 성 관련 생각과 태도 때문에’ 12.7%, 그 다음은 ‘내게 관심이 있어서(나를 예뻐해서)’ 12.3%, ‘학생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11.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학생들과 격없이 지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지도 차원에서’ 23.8%, ‘선생님의 잘못된 성 관련 생각과 태도 때문에’ 14.7%, 그 다음은 ‘내게 관심이 있어서(나를 예뻐해서)’ 12.7% 순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학생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23.2%, ‘학생들과 격없이 지내기 위해서’ 22.1%,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19.0%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교사들의 행동을 재미있고 격없는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13> (성희롱 피해 경험 시)교사의 성희롱 행위 사유

(단위: 명, %)

	사례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게 관심이 있어서 (나를 예뻐 해서)	(학교) 생활지도 차원에서	체벌 차원에서	학생들과 격없이 지내기 위해	학생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선생님의 잘못된 성 관련 생각과 태도 때문에	기타	
전체	281	6.2	12.3	21.5	2.8	25.9	11.7	12.7	6.9	
성별	여자	226	3.2	12.7	23.8	2.2	26.8	8.9	14.7	7.6
	남자	55	19.0	10.5	11.7	5.3	22.1	23.2	4.4	3.8



[그림 II-20] (성희롱 피해 경험 시)교사의 성희롱 행위 사유

(3) 성희롱 경험 당시 가만히 있었거나 참았던 이유

성희롱 당시 가만히 있었거나 참았던 이유 1~3순위까지를 종합한 결과(1+2+3순위),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69.6%)’,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66.8%)’라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외에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36.1%)’,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30.2%)’, ‘학교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적을까봐 걱정되어서(21.9%)’, ‘선생님과 꺾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21.5%)’, ‘그 행동이 어떤 의미(성희롱)인지 알지 못해서(18.8%)’, ‘보복이 무서워서(10.7%)’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들은 성희롱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며, 선생님과 의 관계에서 오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I-14> 피해 당시 가만히 있었거나 참았던 이유(1+2+3순위)

(단위: 명, %)

사 례 수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보복이 무서워서 (말했다가 더 심한 행동이 있을까 봐서)	학교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적을까봐 걱정 되어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 행동이 어떤 의미 (성희롱) 인지 알지 못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선생님과 꺾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봐서	친구들의 이해를 얻기 힘들 것 같아서 (친구들로부터의 비난, 왕따)	기타		
전체	162	66.8	69.6	10.7	21.9	9.0	18.8	36.1	21.5	30.2	3.8	11.5	
성별	여자	133	64.9	66.8	11.6	20.6	8.8	18.6	39.3	23.2	29.9	3.8	12.5
	남자	29	75.6	82.6	6.3	27.9	10.2	19.8	21.5	13.8	31.7	3.9	6.8

(4) 성희롱 경험에 대해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험 여부

교사로부터의 성희롱 경험에 대해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14.0%가 있다고 응답했고, 86.0%는 없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은 16.1%가 있다고 응답했고, 남학생은 5.6%가 응답해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더 낮았다.

〈표 II-15〉 (성희롱 피해 경험 시)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 요청 여부

(단위: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281	14.0	86.0
성별	여자	226	16.1	83.9
	남자	55	5.6	94.4

(5) 성희롱 경험에 대해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대상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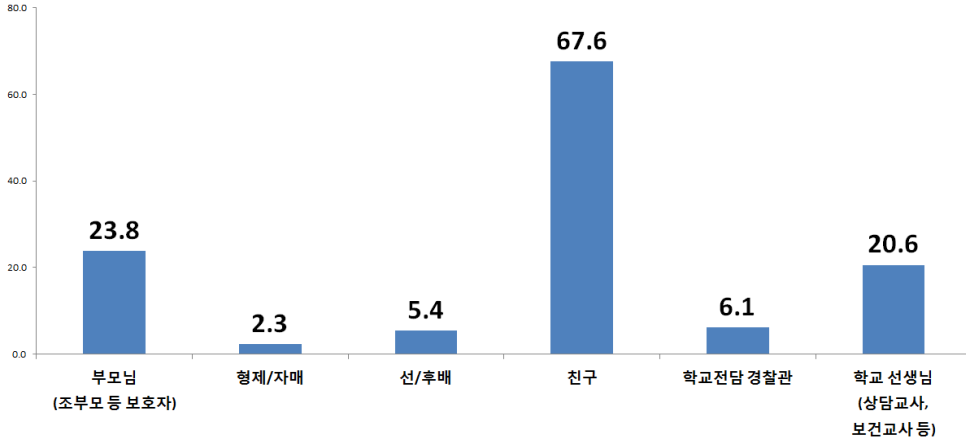
교사로부터의 성희롱 경험에 대해 누군가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경우 그 대상이 누구였는지 (복수응답)를 살펴본 결과, 친구(67.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23.8%), 상담교사나 보건교사 등 학교선생님(20.6%)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친구(73.3%)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모님(23.2%), 학교선생님(19.9%) 순이었는데, 남학생의 경우 학교전담 경찰관(40.1%), 부모님(31.2%), 학교선생님(28.7%) 순이었다.

〈표 II-16〉 성희롱 피해 경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부모님 (조부모 등 보호자)	형제/자매	선/후배	친구	학교전담 경찰관	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전체		39	23.8	2.3	5.4	67.6	6.1	20.6
성별	여자	36	23.2	2.5	5.8	73.3	3.3	19.9
	남자	3	31.2	0.0	0.0	0.0	40.1	28.7



[그림 II-21] 성희롱 피해 경험을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람(복수응답)

(6) 성희롱 경험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

성희롱 경험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던 경우 그 이유를 1~3순위까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78.5%)’,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67.6%)’라는 응답이 높았고, 그 외에도 ‘나만 당한 것이 아니어서(42.3%)’, ‘알려도 해결이 안 될 거 같아서(19.3%)’, ‘선생님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들은 심각하지 않다고 느낄 뿐 아니라 다수가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선생님과의 관계만 껄끄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I-17>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못한) 이유(1+2+3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학교 선생님이 생활 기록부에 부정적인 내용을 적을까봐 걱정되어서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보복이 무서워서(말했다가 더 큰 피해가 있을까봐서)	나만 당한 것이 아니어서	친구들의 이해를 얻기 힘들 것 같아서(친구들로 부터의 비난, 왕따)	알려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몰라서	말해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나 혼자 해결하려고/스스로 해결하려고	선생님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기타	
전체	242	14.4	67.6	7.3	78.5	5.9	42.3	4.1	19.3	10.2	4.4	6.0	17.6	12.0	
성별	여자	190	14.9	68.9	7.3	76.9	6.1	40.1	4.1	22.3	9.6	4.6	3.7	18.5	12.9
	남자	52	12.7	63.0	7.2	84.2	5.4	50.3	4.2	8.3	12.5	3.9	14.3	14.5	8.8

4) 성희롱 목격

가) 목격 경험

(1) 목격 여부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해 다른 학생들이 성희롱 행위를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는 응답은 18.1%, 없다는 응답은 81.9%였다.

〈표 II-189〉 고등학교 입학 이후 교사 성희롱 피해 목격(보거나 들은) 경험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1,014	18.1	81.9

(2) 목격했던 성희롱 행위

본인이 보거나 들었다고 응답한 경우에 한해서 성희롱 행위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신체적 성희롱(70.5%)이 가장 많았고, 언어적 성희롱(52.8%), 시각적 성희롱(12.0%), 강제적 성희롱(3.9%) 순이었다.

〈표 II-19〉 (성희롱 피해 목격 시)보거나 들은 행위(복수응답)

(단위: 명, %)

	사례수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강제적
전체	184	70.5	52.8	12.0	3.9

(3) 목격했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생각

본인이 보거나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조사한 결과(1순위)에서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25.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은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26.1% 순으로, 남학생은 '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21.7%,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1.0%,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18.4%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20〉 (성희롱 피해 목격 시)피해에 대한 생각(1순위)

(단위: 명, %)

	사례수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학생입장 에 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고 생각했다	내가 당한 것 이 아니라서 다행 이라고 생각했다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조 심해야 겠다 고 생각했다	교사의 잘 못 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의 잘 못 이라고 생각했다	학생의 잘 못 이라고 생각했다	기타	
전체	184	45.4	10.2	3.6	7.4	25.7	1.0	0.5	6.0	
성별	여자	169	47.9	10.0	2.6	6.2	26.1	1.1	0.5	5.4
	남자	15	18.4	12.4	13.7	21.0	21.7	0.0	0.0	12.8

1~2순위까지의 조사결과(1+2순위)에서는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61.7%)’와 ‘교사의 잘못 이라고 생각했다(64.4%)’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 해야겠다고 생각했다(24.0%)’는 응답도 많았다.

〈표 II-21〉 (성희롱 피해 목격 시)피해에 대한 생각(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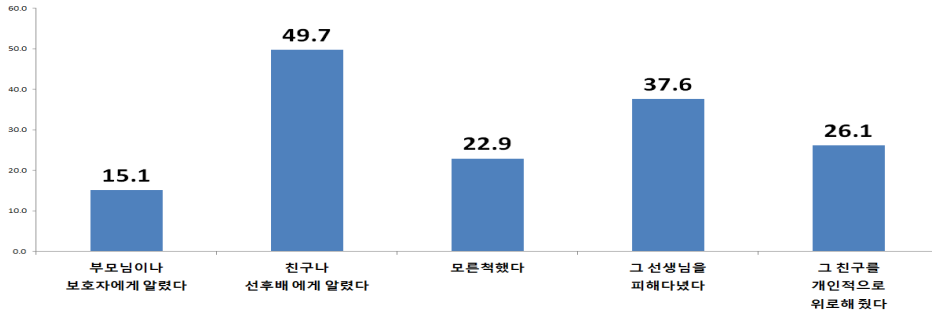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옳지 않고 부당 하다고 생각했 다	학생입장 에서는 어 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당한 것이 아니 라서 다행 이라고 생 각했다	나도 당할 수 있으니 까 조심해 야 겠다고 생각했다	교사의 잘 못 이라고 생각했다	학교의 잘 못 이라고 생각했다	학생의 잘 못 이라고 생각했다	기타	
전체	184	61.7	17.4	7.8	24.0	64.4	11.6	3.9	9.2	
성별	여자	169	64.4	17.3	5.4	23.6	66.3	11.3	2.9	8.8
	남자	15	32.1	18.6	34.0	27.6	44.5	15.1	15.3	12.8

(4) 성희롱 행위 목격 이후 대응 행동

다른 학생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복수응답),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그 선생님을 피 해 다녔다’ 37.6%, ‘그 친구를 개인적으로 위로해줬다’ 26.1%, ‘모른척 했다’ 22.9% 순이었다.

[실태조사 결과발표 1]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주: 단위는 %, 응답자는 184명임.

[그림 II-22] (성희롱 피해 목격 후)본인의 행동(복수응답)

5) 성희롱 사건 처리 기대 및 참여 의사

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 가능성

만약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나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얼마나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41.7%가 불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았고, 58.3%는 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46.2%가 불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 23.5%가 불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서, 성별 간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표 II-22> (공론화된 적 없다면)향후 사건 발생 시 처리의 공정성 예상 정도

(단위: 명, %, 점)

	사례수	①매우 불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1점)	②약간 불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2점)	①+②	③약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3점)	④매우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4점)	③+④	평균	
전체	951	11.0	30.6	41.7	29.7	28.7	58.3	2.76	
성별	여자	759	12.4	33.8	46.2	30.5	23.3	53.8	2.65
	남자	192	5.4	18.0	23.5	26.5	50.0	76.5	3.21

나) 향후 성희롱 사건 해결과정에서의 참여 의사

만약 재학 중인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나 문제가 공론화된다면 그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2.9%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II-23〉 (공론화된 적 없다면)향후 사건 발생 시 문제해결 과정 참여 의향

(단위: 명, %)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951	62.9	37.1
성별	여자	759	63.9	36.1
	남자	192	58.7	41.3

6) 성희롱 경험 시 대응 수요

가) 향후 성희롱 경험 시, 도움요청 대상

향후 본인 또는 친구에게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에 대해 1~3순위까지 질문한 결과, 부모님(69.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친구(44.8%), 117 학교폭력신고상담센터(42.5%), 학교전담경찰관(39.1%), 학교 선생님(34.5%) 순이었다. 성별, 학년별, 설립유형별로도 이와 같은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에 대한 이용의향은 낮아서, 부모님이나 친구와 같은 사적인 체계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고, 공적체계를 이용할 경우에도 상담체계보다는 성희롱 사건을 폭력이나 범죄로 인식하여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II-24〉 향후 본인 또는 친구에게 교사 성희롱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1+2+3순위)

(단위: 명, %)

사 례 수	아무에게도 알리거나 도움을 요 청 하고 싶 지 않다	부모님 (조부모 등 보호자)	형제/ 자매	선후배	친구	학교 선 생님 (상담 교 사, 보건 교사 등)	117 학 교 폭력 신고 상 담 센터	학교 전담 경찰관	청소년 상담 복 지 센터/ 1388	wee class, wee center	기타	
전체	1,014	7.5	69.5	15.3	6.3	44.8	34.5	42.5	39.1	18.2	3.2	3.6

나) 학생들의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1~3순위(1+2+3순위)를 종합하면,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52.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46.8%)’,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46.5%)’, ‘더 지속적으로, 심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37.2%)’,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서(31.2%)’ 순이었다.

〈표 II-24〉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적극 대응이 어려운 이유(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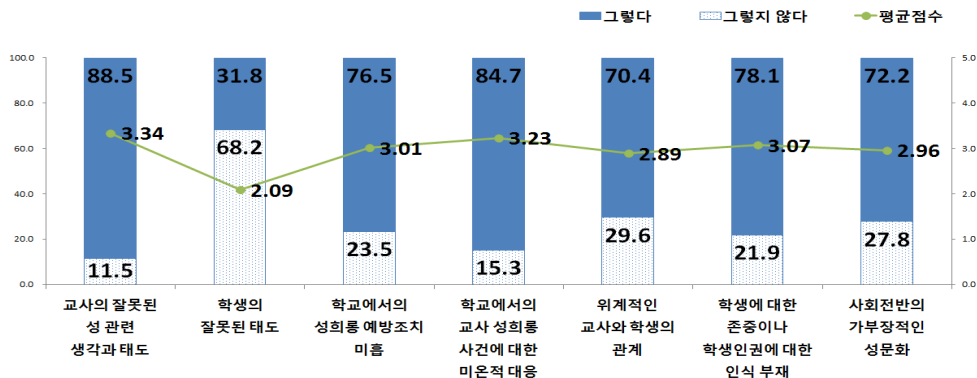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수	특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더 지속적으로, 심한 피해를 당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께 알려질 수 있어서	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서	기타	
전체	1,014	20.0	46.5	46.8	37.2	52.0	23.6	31.2	2.2	
성별	여자	814	17.4	46.9	49.9	37.7	53.4	24.5	32.4	2.6
	남자	200	30.4	44.9	33.9	35.3	46.4	20.1	26.6	0.4

7)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에 대한 인식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7개 보기항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동의정도를 조사한 결과, 각 문항별로 그렇다는 응답률을 보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 ‘교사의 잘못된 성 관련 생각과 태도’ 88.5%, ‘학교에서의 성희롱 예방조치 미흡’ 76.5%, ‘학교에서의 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84.7%, ‘위계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70.4%, ‘학생에 대한 존중이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 78.1%, ‘사회전반의 가부장적인 성문화’ 72.2%, ‘학생의 잘못된 태도’ 31.8%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의 잘못된 성 관련 생각과 태도, 학교의 교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학생에 대한 존중이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 등을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의 발생 원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볼 때, 응답자들은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i)교사의 개인적 요소, ii)학교에서의 예방조치와 사후조치 미흡이라는 구조적 요소, iii)위계적이고 학생 존중/학생인권 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학교문화와 우리사회 전반의 가부장적인 성문화 등 환경적인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I-23]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생각(전체 응답자)

8)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 수요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방안을 1~3순위까지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7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45.8%)’,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31.6%)’,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30.7%)’,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체계 활성화(30.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78.5%)’,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48.5%)’, ‘성희롱 사건에 대한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 운영(33.5%)’,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30.9%)’,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체계 활성화(30.3%)’ 순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가해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69.6%)’,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34.9%)’, ‘교직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34.6%)’,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체계 활성화(29.4%)’,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심 확대(28.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4〉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방지 대안(1+2+3순위)

(단위: 명, %)

	사 례 수	가해 교 사에 대 한 처벌 강화	교직원 대상 성 희롱 예 방 교육 강화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관 심 확대	피해 사 실에 대 한 신고 절차 안 내	피해 사 실에 대 한 신고 체계 활 성화	학생 대 상 성희 롱 예방 교육 강 화	학교 내 학생 성 희롱 피 해 상담 체계 확 대	학교 밖 학생 성 희롱 피 해 상담 체계 마 련	피해자 보호 조치 강 화	성희롱 사 건에 대한 공정한 사 건처리 절 차 운영	민주적 이고 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	기타
전체	1,014	76.7	31.6	18.6	17.8	30.1	16.4	12.0	9.7	45.8	30.7	9.9	0.3
성별	여자	814	78.5	30.9	16.2	16.8	14.6	10.7	9.2	48.5	33.5	10.2	0.4
	남자	200	69.6	34.6	28.3	22.0	29.4	23.7	17.5	34.9	19.3	8.3	0.0

9) 초·중등학교에서의 성희롱 경험

가) 초등학교에서의 성희롱 경험

현재 고등학생인 조사대상자들에게 초등학교 시기의 성희롱 경험에 대해 질문한 문항이다. 회상 방식으로 조사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는 점은 조사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초등학교 때 교사에 의해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전체 성희롱 경험률은 17.8%로, 학생 10명 중 2명은 초등학교 때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16.8%로 가장 높았고, 언어적 성희롱 4.4%, 시각적 성희롱 3.1%, 강제적 성희롱 1.4%, 분위기형 성희롱 0.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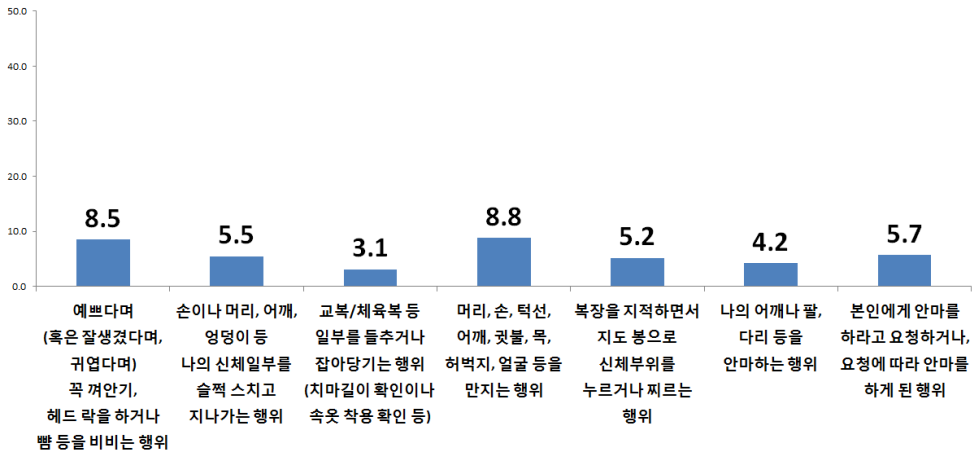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성희롱 경험률은 18.0%, 남학생의 성희롱 경험률은 17.0%였다. 여학생(16.9%)과 남학생(16.4%) 모두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언어적 성희롱에서는 여학생 4.4%, 남학생 4.5%였고, 시각적 성희롱에서는 남학생 3.6%, 여학생 3.0%였다.

〈표 II-25〉 초등학교 시절 교사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

(단위: 명, %)

		사례수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강제적	분위기	전체 성희롱 경험률
전체		1,014	16.8	4.4	3.1	1.4	0.8	17.8
성별	여자	814	16.9	4.4	3.0	1.4	0.9	18.0
	남자	200	16.4	4.5	3.6	1.3	0.4	17.0

피해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신체적 성희롱과 관련하여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성희롱에서는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불,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8.8%)’, ‘예쁘다며(혹은 잘 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기, 헤드 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8.5%)’ 등에 대한 경험률이 높았다.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그림 II-24] 초등학교 시절 교사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나) 중학교에서의 성희롱 경험

현재 고등학생인 조사대상자들에게 중학교 시기의 성희롱 경험에 대해 질문한 문항이다. 초등학교 시기와 마찬가지로 회상 방식으로 조사한 점은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한다. 중학교 때 교사에 의해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전체 성희롱 경험률은 17.5%로, 학생 10명 중 2명은 중학교 때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신체적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15.7%로 가장 높았고, 언어적 성희롱 5.9%, 시각적 성희롱 3.8%, 강제적 성희롱 1.1%, 분위기형 성희롱 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의 성희롱 경험률은 18.3%, 남학생의 성희롱 경험률은 14.2%였다.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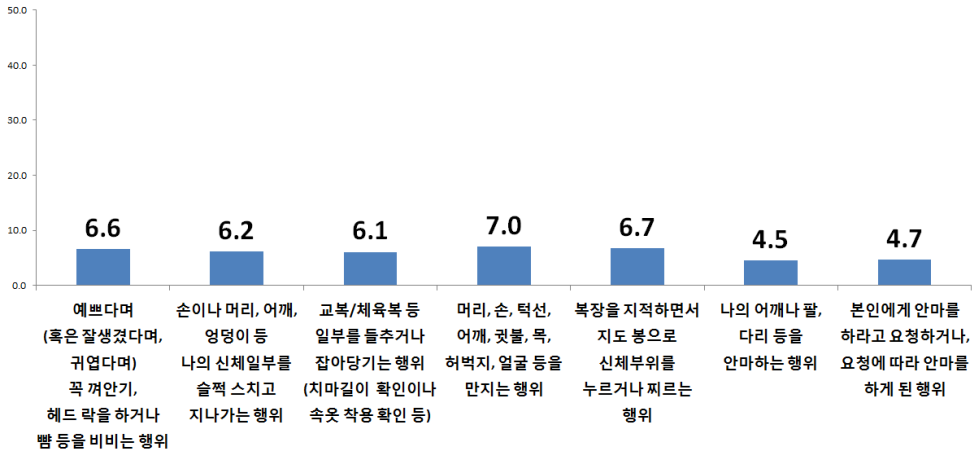
(16.3%)과 남학생(13.4%) 모두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언어적 성희롱에서는 여학생 6.4%, 남학생 3.9%였고, 시각적 성희롱에서는 여학생 3.9%, 남학생 3.3%였다.

〈표 II-26〉 중학교 시절 교사 성희롱 피해 유형별 경험률

(단위: 명, %)

	사례수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강제적	분위기	전체 성희롱 경험률	
전체	1,014	15.7	5.9	3.8	1.1	1.1	17.5	
성별	여자	814	16.3	6.4	3.9	0.9	1.1	18.3
	남자	200	13.4	3.9	3.3	2.2	1.2	14.2

가장 높게 나타난 신체적 성희롱 관련해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머리, 손, 턱선, 어깨, 귓볼, 목, 허벅지, 얼굴 등을 만지는 행위(7.0%)’,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 봉으로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6.7%)’, ‘예쁘다며(혹은 잘 생겼다며 귀엽다며) 꼭 껴안기, 헤드 락을 하거나 뺨 등을 비비는 행위(6.6%)’, ‘손이나 머리, 어깨, 엉덩이 등 나의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6.2%)’,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6.1%)’ 등에 대한 경험률이 높았다.



주: 백분율은 전체응답자 1,014명(여자 814명, 남자 2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정함.

[그림 II-25] 중학교 시절 교사에 의한 신체적 성희롱 경험률(전체 응답자)

2. 면접조사결과

가. 조사개요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반적인 실태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구조와 맥락 등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고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관계자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면접내용은 학교 내 성희롱 발생원인 및 구조, 성희롱 피해에 대한 대응 상 어려움과 한계, 학교에서의 사건처리 방법 및 사건 은폐 시도 여부, 학교 내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표 II-30〉 관계자 면접조사 내용

논의사용	주요내용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피해유형(시간적/언어적/신체적 등), 피해대상(학년, 인원수-복수여부 등), 피해상황과 피해 장소 등, 피해로 인한 영향 ② 피해자의 대응(신고, 상담 등의 적극성), 피해 대응 시 어려움/한계 ③ 2차 피해 양상 ④ 학교유형별(남녀공학/남녀분리, 일반/특목, 공립/사립) 차이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발생시, 학교의 대처 / 사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학교에서 확인/발견되는 경로(인지되는 계기/경로): 피해자의 상담 & 피해자의 신고 & 제3자의 목격 등 ② 사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한계점) ③ 사건처리에 대한 어려움 ④ 사건처리에서의 학교유형별(남녀공학/남녀분리, 일반/특목, 공립/사립) 차이, 차이의 원인 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분리조치, 처벌 등) 여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 차원 ② 제도운영 차원 ③ 개인적 차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발생 방지 혹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및 재발방지 조치 ② 현행 사건처리/조치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

면접은 총 10회에 걸쳐, 2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초·중·고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학교 내 성희롱 사건 처리 담당자 및 교사, 각 지역 교육청 담당자, 청소년성문화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청소년성문화단체 실무자에는 청소년 활동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면접조사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태 및 사건처리 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에 의해 발생한 학교 성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청 관계자 및 지자체 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진행하였다.

나. 조사결과

1) 성희롱 실태

학생들은 교사들로부터 신체를 평가하거나 비유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나 성차별적인 표현 등으로 인한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고, 껴안고 만지는 척하면서 특정 신체부위를 접촉하거나, 헤드락을 하거나, 복장점검이나 소지품 점검을 하면서 신체부위를 찌르는 등 신체적 성희롱도 경험하고 있었다.

성희롱 가해 교사들은 특정 학생을 타깃팅 하기도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가정환경이 어려워 관심이나 돌봄, 애정 등을 충분히 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본인을 예뻐하고 격려한다고, 관심이나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은 특별히 자신을 챙겨준다고 착각하게 되므로 자신들의 성희롱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다. 문제아로 분류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다른 학생들도 성희롱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학생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체 별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 피해로 인해 학생들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해당 교사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막히거나 깜짝 놀라고 심장이 뛰며, 수업을 듣기 어렵고 악몽을 꾸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생들은 성적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생활지도나 교과수업 등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장난처럼 이뤄지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지, 웃기는 상황인지, 본인에게만 일부러 하는 건지 아닌지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구조 하에서 학생들이 교사의 행위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생활기록부나 진학 등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교사를 신고한다는 것은 학생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2) 성희롱 대응

학생이 성희롱 피해를 이야기하면 교사는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학생에게 돌린다.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네가 민감한 거야’, ‘네가 예뻐서 그랬을 거다’, ‘그분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무마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그 교사를 조심하라는 식의 개인적인 조언으로 조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대응해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

학부모들도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성적 농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등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나 문제제기에 따른 두려움도 크다. 학생들의 경우 성희롱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메갈(리아)로 몰리고 주위 학생들과 교사 모두에게 낙인찍히기도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 문제제기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SNS로 동일한 경험에 대해 소통하거나 외부로 알려져 사회적 파급효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성희롱 사안에 대응해서 공론화가 되면 2차 피해, 2차 가해가 이뤄지기도 한다. 성희롱 가해 교사를 따르는 혹은 그 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불이익이나 불편함, 어려움을 겪게 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 그 교사의 동료 교사들에 의해 ‘네가 참으면 될 텐데’, ‘신고까지 꼭 했어야 했니’라는 식의 반응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학생들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을 때 상담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만한 학교 내 인프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치 않다. 상담실은 문제 학생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되고 있어서 성희롱 피해 상담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고, 가더라도 같은 교사이기 때문에 비밀보장에 대한 우려도 있다. SPO

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이용하기 어렵고, 학교 전담 보안관도 70·80대 남성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신고해서 사건화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사가 그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와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가해 교사를 단죄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3) 경찰 및 학교에서의 사건처리

경찰로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 진술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판단하는 내사단계를 거쳐 사건을 인지하게 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진다. 이때, 가장 어려운 점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의 증거 정황은 있는데, 피해자가 없다는 점이다.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무기명으로 정황을 수집하면 다양한 피해 실태가 수집되지만 실제 피해 진술을 요청하면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진술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건 학생과 부모 모두 증언에 대한 부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117이나 SPO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교장은 학생과 교사를 분리조치하고, 수업 정지, 담임교사인 경우 담임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화되었지만, 학교는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 사안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녹음이나 진술서 등 증거 채취에 집중해서 증거가 없으면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인 교사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사건화 된다 해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 바로 직위해제를 시키지 않고 병가처리나 연가처리를 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를 시키는 경향도 있다. 성희롱 사안이 알려져 교육청에서 실태 파악을 위해 개입하면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 교사들은 동료의 문제이고 자신의 문제로 인식되기도 해서 적극적으로 성희롱 가해 교사를 옹호한다. 학부모까지 동원하는데, 학부모도 취업이나 진학 등과 관련된 교사의 권한 때문에 결국은 동참해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교사 간의 문제는 고소·고발의 단계까지 가기 어려운데, 피해자가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증거 불충분이나 피해자 진술 거부 등의 이유로 종결처리 된다. 사건화 된다 해도 직위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원복 되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그 기간 동안 무죄 입증을 위해 대형로펌을 동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기도 한다.

4) 징계조치

징계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양형기준 중에서 경한 수위의 징계조치가 이뤄

지고 있다. 가해교사는 ‘노부모를 모신다’, ‘존경받는 교사였다’ 등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징계 수위가 낮아지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탄원서의 내용이 양형기준에 정상 참작되어 경한 징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 그 나머지의 징계처분도 재심신청을 통해 감형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난 사건이라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 교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대형로펌을 통해 변호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서, 엄정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미온적인 징계조치로 인해 실제 가해교사가 무혐의 등으로 교단에 복귀할 경우 피해 학생과 부모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5) 발생구조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은 학교라는 폐쇄성, 교사와 학생의 위계구조, 교사의 낮은 감수성,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성, 학습의 재미와 암기를 위한 학습방법 등이 혼재되어 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성차별적인 구조, 교사의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위계적이고 우월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전히 가부장성이 남아 있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로 인식하여 학생들에 대해 자신을 아버지, 학생을 자녀로 생각하고 행동하거나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교사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감수성도 낮는데, 교사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언행들에 대해, 학생들은 성희롱이고 성차별적인 언행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 간의 인식 차이가 크다.

수업시간에 암기법이나 학습법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재미를 주거나 수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음담패설을 하기도 하고, 이를 학생들과의 소통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내용의 언행이 재미와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혼재되어 있다.

남녀공학에서는 남교사와 남학생들 간의 동조와 연대로 인해 수업시간이나 교실에서 일어나는 성적 표현이나 음담패설 등의 성희롱에 대해 여학생이 대응하려 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다. 학생들은 하나의 인격 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교사가 어느 정도 통제해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성희롱 언행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료교사에 대한 온정적 시선이 존재한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에서 볼 때, 학생들은 학교현장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 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피해를 당해도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대응하지 못한다. 이는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을 발생, 존치시키는 구조와 문화가 존재하고 있고, 교사와 학생이라는 위계구조 하에서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 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³⁾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기

미투가 문화예술계, 정치계 등을 넘어 대학과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의 모 여자고등학교 창문에 가지각색의 포스트잇으로 ME TOO, WITH YOU라는 글자를 만든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스쿨 미투’의 시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페이스북에 ‘스쿨 미투’ 페이지가 개설되어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경험하고 있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그들의 언어로 드러나고 있다.

학교라는 공간이 갖는 군대와 같은 폐쇄성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권력,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그 피해를 드러내더라도 ‘학교 명예’ 등을 이유로 그 피해는 은폐되거나 축소된다. 가해 교사가 성비위로 징계를 받더라도 약 40%는 경징계나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는 것에 그친다.⁴⁾

이처럼 학교 성희롱은 그 동안의 법제도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 많은 법과 제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게 한다.

이 발표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해 현행 학교 성희롱 관련 법제 현황과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사건 처리 절차를 살펴본 후에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발표문은 황정임·박선영·윤덕경·장명선·동제연(2017),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부분을 발췌하거나 수정·보완하였다.

4) 국회의원 박경미 보도자료, 2016.10.5.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추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감봉 등의 경징계 또는 중징계 중에서도 교단복귀가 가능한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음.

2. 학교 성희롱 규제 관련 법제 현황

가. 성희롱 정의 및 개념

1)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 및 단체는 제외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제3조제2호)’로 정의하고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5)는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희롱을 동호의 라목에 규정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제2조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5) 제2조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3) 「아동복지법」 상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⁶⁾에 대하여 i)아동을 매대하는 행위, ii)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iii)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iv)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v)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vi)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vii)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viii)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ix)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x)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제1호)’를 말한다. 그리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제2조제1호의2)’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제2조제1호의3)’를 말한다.

구법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2.3.21. 개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한편 학교폭력에는 성폭력과 성적 사이버폭력이 포함된다. 성폭력에는 성적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 사이버폭력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⁷⁾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범죄

6)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제3조제1호).

7) 정제영 외 13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외, 2014, 7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에서 살펴본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지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단,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5조⁸⁾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⁹⁾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¹⁰⁾,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¹¹⁾의 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죄를 말한다.

나.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 성희롱 예방

가)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제 현황

(1) 「양성평등기본법」

동법은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및 방지조치를 다음과 같이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 방지를 위해, i)국가기관 등에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이 경우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ii)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 수립, iii)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마련, iv)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v)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성희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와 관련된 비밀 보장에 관한 사항,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한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 업

8)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9)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5조(미수범)

10)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39조(강도강간)

11)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vi)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동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i)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ii)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iii)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iv)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동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방지 조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전산입력,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관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0조).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거나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또한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i)법원, ii)감사원, iii)국민권익위원회, iv)검찰청, v)경찰청, vi)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성희롱 사건을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을 통하여 i)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사실, ii) 성희롱에 관한 국가기관등의 고충처리 또는 구제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학습권·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 중 어느 하나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징계 등을 그 관련자가 소속된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에 따라 확인된 i)「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ii)「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iii)「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iv)「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v)「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학교폭력의 개념·실태 및 대처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2)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가) 신고의무 및 교육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제34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67조).

또한 동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¹²⁾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동법 제18조).

(2)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6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는 i)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ii)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iii)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6조).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12)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위의 내용의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0조).

나) 비밀누설금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¹³⁾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21조제1항). 비밀의 범위는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등이다(동법 제2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

또한 이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제3항).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 또는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동법 제45조 및 제46조¹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

13)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4)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31조).

또한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대상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다) 가해자 징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i)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ii)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1항). 그러나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i)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iii)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iv)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v)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4조제2항).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46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업무
 2.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가해자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소송과 피해배상청구 등의 사법처리절차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5.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6.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및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표1〉는 성희롱,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이다. 현재 징계 기준은 2017. 7. 26. 개정된 것으로, 성희롱 사안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가능한 징계의 범위가 넓다.

〈표1〉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성매매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음주운전	비고 제7호에 따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출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학교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¹⁵⁾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사건 처리 과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진다.

	단계	구분	주체	사안처리 내용	유의사항
1	인지 및 접수	행위 교직원	성고충 상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 즉시 신고 접수 대장 기록 • 학교장 보고 • 경찰신고 • 교육청 보고 • 보호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 신고의무 • 담당부서, 절차, 보고 내용은 관할 교육청에 따라 다름(사안 발생 전에 확인)
		피해 학생	학교폭력전담기구		
2	초기대응	피해 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피해학생 응급조치 • 관련 학생 안전 조치 • 2차 피해 방지 • 긴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학생과 행위 교직원 간 분리 • 비밀누설금지업무 이행
3	사안조사 및 조사결과 보고	행위 교직원	성고충 상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조사 및 증거수집 •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교육청 보고 • 성희롱심의위원회/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소집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관련자는 장소 분리하여 가급적 동시 조사 • 결과보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특이사항 기술 • 보호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및 향후 처리 절차 통보 • 모든 서류에 관련자 익명처리 •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음(동의서 필요)
		피해 학생	학교폭력 전담기구		
4	심의조치 및 결정	행위 교직원	성고충 상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 사안조사 보고 • 피해·행위 측 사실확인 및 의견진술 • 피해·행위자 조치 심의·의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누설금지업무 안내 • 긴급조치 보고 • 피해·행위 측 참여의사에 따라 의견진술 생략 가능
		피해 학생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5	조치결과 이행 및 사안관리	행위 교직원	학교장/성고충 상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치결과 서면 통보 (교육청, 보호자) • 결과 이행, 사안관리 • 관련자 지원, 재발방지 노력 	
		피해학생	학교장/담당교원		

15) 박소진 외(2017),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표준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14쪽

4.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이상의 법제현황과 사건처리 절차, 그리고 앞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언하면 아래와 같다.

가. 입법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성희롱 정의와 방지 관련해서는 교육관계법이 아닌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학교를 규율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 관련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성희롱을 포함한 젠더폭력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7조를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에게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성희롱 등 젠더폭력 방지를 의무화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기능에 교원의 젠더폭력 의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나. 예방체계 강화 방안

1)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

교사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내용이 보다 교육현장과 밀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와 양상을 반영한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교사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감, 교장 등 관리직 대상 성희롱 교육이 별도로 진행 될 필요가 있다. 이들이 학교 성희롱 방지 의무의 주체이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희롱에 대해 어떤 감수성과 민감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학교 성희롱 방지에 있어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 오사카시현에서는 교직원에 의한 성희롱 근절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생 대상 성희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활용해 각 학교에서 효과적인 연수를 수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교직원의 문제행동에 대해 습득하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희롱은 피해자 본인이 싫다고 느끼는 것이 판단기준이며, 친밀함의 표현이나 격려 등의 동기였다 해도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가벼운 터치'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사소한 농담이다',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교직원의 언동이 학생에 미치는 영향을 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교직원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학생의 용모나 체형 등을 화제로 삼거나 조롱하는 발언하기', '학생 앞에서 듣기 힘든 농담하기', '학생을 지도할 때 어깨나 등 신체 만지기', '학생을 무릎 위에 앉히거나 필요 이상의 신체 접촉하기', '밀실 등에 학생과 같이 있기',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성적지향과 관

련하여 고정적인 견해를 주장하여 학생을 조롱하기 등을 성희롱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교육콘텐츠 보완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 역할극,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이 현실적 제약이 있다면, 학교 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도록 광고물/홍보물을 부착하여 교사뿐 아니라 학생 대상 교육효과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2) 성희롱 방지 매뉴얼 제작

최근 들어 몇몇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안을 포함한 매뉴얼이 제작되고 있는데, 모든 교육청에서 혹은 교육부 차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일본 오사카시현 등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방지를 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에 의한 학생 대상 성희롱이 무엇인지, 특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혹은 평가하는 자와 평가받는 자라는 교사와 학생의 위계구조가 갖는 특수성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의 특성이 무엇인지,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사안을 처리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고 무엇을 증시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사안 처리에 있어서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이며, 동료교사를 비호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학교 내 사건을 공정하고 분명하게 처리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작된 매뉴얼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 등에게 널리 알려져 혹시라도 피해 상황을 경험할 경우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에 성희롱 관련 교육 강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서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연수의 종류와 과정)에 따르면 직무연수와 자격연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직무연수는 제18조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연수, 그 밖에 교육의 이론·방법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에 해당한다. 자격연수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에 해당하고,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수석교사과정, 원감과정, 원장과정, 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하고, 연수할 사람의 선발에 관한 사항 및 연수의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교사라면 누구나 받게 되는 직무연수와 자격연수에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성평등 감수성, 인권 감수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중 전문교육 영역에서 인성교육 중 하나로 안전한 학교를 위한 교사의 역할(학교폭력(성폭력·성희롱 포함) 및 교권침해예방 포함)을 다루고 있다. 인성교육이 전체 교육시간의 20~30%인데, 여기에 포함된 과목이 약 8개이고 그 중 하나가 학교폭력이며, 학교폭력 중 하나로 성폭력, 성희롱 이슈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깊이나 집중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학교 성희롱 실태조사 실시

교사에 대한 성희롱예방 및 방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도 예방이 발생 이후의 조치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학생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통해 성희롱 발생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교사에 의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고 있지 않은데, 교사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실태와 유형, 학생들의 대응방법과 한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 및 연구도 필요하다.

5) 성희롱사건 대응력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선

현재 학교의 평가 내지 학교장 등에 대한 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장 등이 관리감독상의 책임으로 인해 승진 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건을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하는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방향으로 평가방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다. 실효적 사건처리 체계 강화

1) 관련 외부 전문가 참여 활성화

현재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교사조치는 성희롱심의회에서, 학생보호조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동일 사안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현행 시스템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보다 정확하게 다뤄지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현재도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반영되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한 가해자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본 사안과 관련된 2차 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 재발방지를 위한 교사, 학생 등 학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치까지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2) 징계조치 및 징계처분의 통일적 기준 마련

일본 오사카시현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희롱은 교직원으로서의 자질과 적격성이 결여된 행위로 학교교육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므로, 징계처분을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인 징계처분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징계 수위가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징계수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미흡하여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되고,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견책, 감봉처분 후 교단 재유입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견책, 감봉처분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해 교사가 교단으로 복귀하게 된다. 가해 교사의 복귀에 대해 피해 학생의 두려움이 상당하다. 피해 학생들의 두려움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에 대한 교정이 없이 복귀할 경우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해교사의 교단 복귀 시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자 교육이나 가해자 상담을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성고충상담원 역량 강화

성고충상담원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성고충상담원 교육이 점차 집합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집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집합교육도 워크숍이나 슈퍼비전 등의 방식을 활용해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안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5) wee클래스 교사, 상담교사 등의 성희롱 상담 역량 강화

wee클래스 교사, 상담교사 등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상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 wee클래스 교사, 상담교사와의 상담이나 면담과정에서 성희롱 경험을 토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청소년기나 학교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사안을 다루기보다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초기 상담과 정보 제공, 외부기관과의 연계 등과 관련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지 정 토 론〉

- 김애라 (서강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대우교수)
- 박하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주임교수)
-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 윤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 박현이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 노형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토론 1

김애라 (서강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대우교수)

1. 젠더감수성 높아진 청소년, 성희롱에 대한 성별 간 태도 격차

최근 십대들이 디지털미디어를 매개로 점차 다양한 성적 정보 및 인권 관련 이슈를 접하고 이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가 많아진 환경 변화 속에서 점차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더 문제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가시화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실태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여학생과 남학생 사이에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바라보는 관점의 성별 차이가 다소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성희롱 인지 비율에서의 성별 차이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희롱으로 인지하는 것과 성희롱에 대해 어떤 관점과 입장, 태도를 견지할 것인가에서 격차가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목격했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생각에서의 응답률을 보면, 여학생은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많았고, ‘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26.1% 순으로, 남학생은 ‘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21.7%, ‘나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1.0%, ‘옳지 않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18.4%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는 성희롱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에서도 나타나는데, 여학생의 경우 46.2%가 불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 23.5%가 불공정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성희롱 사건 해결에 있어 기존의 제도교육 내 해결 방식을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성희롱을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별격차는 2017년 서울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권리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전반적으로 성차별이나 성희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그 인식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이슈를 사소화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런 식의 차이는 학교 내부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을 문제화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기회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격차는 전반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2. 성별권력관계를 재생산하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

특히 학교와 같은 교육제도 내에서는 성희롱을 단순히 남자 교사에 의한 여학생 대상의 일종의 폭력으로 국한하는 일차적 관점에서 나아가 성차별적인 섹슈얼리티를 학습토록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사의 성희롱은 단지 특수하고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학교 내 성차별적인 문화에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성별 관계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사의 태도는 그 자체로 교육적인 행위이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피해 학생으로 하여금 고통을 겪도록 하는 것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정한 사안이나 특정 성별, 계층, 학력수준 등에 따라 어떤 태도를 취하는, 즉 교사의 인권 의식은 생활지도는 물론 교과목 지도 시 학습 주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남성성과 여성성, 그리고 이 관계성에 관한 학습의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성희롱의 문제는 성평등, 학생 인권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교사에 의한 성희롱, 성차별적 언행은 엄중하게 모니터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은 권력, 위계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성희롱이며, 이 때 주로 여학생들이 그 주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학생'이 아니라 '여'학생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본 실태조사에서 교사가 성희롱을 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성희롱이 성적 주체로서의 남성과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는 성별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교사의 성희롱에 대해 여학생의 경우 '학생들과 격 없이 지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학교)생활지도 차원에서' 23.8%, '선생님의 잘못된 성 관련 생각과 태도 때문에' 14.7%, 그 다음은 '내게 관심이 있어서(나를 예뻐해서)' 12.7% 순이었고, 남학생의 경우 '학생들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23.2%, '학생들과 격 없이 지내기 위해서' 22.1%,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19.0%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교사들의 행동을 재미있고 격 없는 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남학생들 역시 교사가 하는 음담패설이나 신체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이를 문제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여학생에 비해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성성이 성적으로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 성적 농담을 잘 하는 것,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 등으로 구성되는 현재 한국의 남성성의 학습과 관계된다.

'수업시간에 암기법이나 학습법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재미를 주거나 수업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교사의 '격의 없는 성적 농담' 등은 남학생들이 남성 간의 성적 접촉 혹은 농담, 즉 남성 간 성희롱이 '성희롱'이 아니라 남성적 친밀함의 표현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그리고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여성다운 성과 남성다운 성이라는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와 성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시키는 비공식적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지속 가능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내 성차별 해소

교사에 의한 성희롱 문제는 이제 한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는 이슈인 만큼 보다 강력한 예방 및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팀에서도 이에 대해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서의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관련 교육 강화, 예방을 위한 성희롱 실태조사, 관리감독자에 관한 평가체계 수정 등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은, 발표문에서 ‘교직원들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표현한 바에서와 같이 교직원들이 성희롱이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혐오적 표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가 마련 될 필요가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학교교육에서는 여성의 삶과 경험이 주변화되어 있으며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적인 기대와 교육내용, 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른 태도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 해왔다. 주로 여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아가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 정책 및 문화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절반인 여성의 입장에서 학교 경험과 문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성차별적인 사회에서의 학교문화와 교육은 성평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교는 가족이나 노동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권력관계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공간이다. 학교나 교육이 이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때 성희롱은 ‘친밀감의 한 표현’으로, 또한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것은 여학생이 ‘메갈’이기 때문에, 남학생이 ‘기집애’ 혹은 ‘게이’ 같은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희롱의 원인이 성차별이라는 점, 확고한 성별이분법이 강요되는 문화임을 고려한다면 향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예방은 교사들의 성평등 관점과 학교 내 성평등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토론 2

박하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주임교수)

들어가기

아이들에게 학교란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여겨지는 곳이다.

2013년 국제어린이재단이 세계 아동 1,394명을 상대로 “폭력·착취로부터 보호받는 순간이 언제인지?”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의 56%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라고 대답하였다.

당연하게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와 함께하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대답할 줄 알고 있었던 대부분의 성인들, 특히나 학부모들은 이 설문조사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에게 학교란 것은 수면이나 잠깐 동안의 학원 수업을 제외하고는 오롯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아동,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기고, 그렇게 믿어왔던 학교가 안전하기는커녕, 오히려 성희롱 피해를 조장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다.

아이들의 학교 성희롱 실태, 그리고 실제 상황 - “The LIVE”

2014년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되어 징계 받은 교사가 242명이고, 이 중에서도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는 35명으로 보도되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 자료를 분석해 본 바로도, 성범죄자 중 교직원의 비율이 2013년 0.14%에서 2014년 0.16%, 2015년 0.23%로 비율은 낮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실제 학교 안의 사건들은 은밀하고도 심하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교사-교사대상의 사건이 아닌 교사-학생간의 성희롱 사건은 더욱 그러하다.

서울의 명문 모 사립여중학교에서 발생한 하나의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작년 9월경에 신고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은 모든 학교에서도 당연하게 존재하는 이유들인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립학교는 오랜 기간의 전통과 명예가 이어져 오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 안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은 국공립학교와는 다르게 처음 임용 받은 교사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오롯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학교를 떠나게 되지만 교사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 사건은 중학생 아이들이 40대 중반의 남교사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언어적 성희롱을 당해온 사건으로 수업시간에 예쁘다며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은 교사를 형사고소 하면서 접수된 사건이다.

아이는 처음에 그것이 성희롱인지, 장난인지 헷갈려 하다가 한 두 번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당해오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가 “해도 해도 너무 하네”라는 말을 듣고서야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경찰에서는 2달간의 수사 끝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도 기록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항의방문을 해도 어찌된 일인지 검찰은 “사건이 많아서... 검사가 교체될 예정이다..”라는 변명으로 오랫동안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결국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현재 해외 유학을 준비 중에 있다.

보통은 사립중학교에서 같은 이름을 쓰는 그 안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목적으로 그곳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진학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아이는 고등학교 생활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스쿨 미투, 문제점 그리고 제언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를 통한 제언을 해 보고자 한다.

1. 학교의 묵인과 방치

이 사건은 사립학교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다.

아이들은 3년 뒤면 학교를 떠나가지만 그 가해 교사는 수십 년 동안 그 공간 안에 있었다.

가해 교사는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당연히 학교 측에서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경고,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오랜 시간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어 전쟁터에 같이 나간 전우들이 갖고 있는 동료애보다 더욱 끈끈한 동료애를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이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서는 해당 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등)으로 수사기관, 혹은 교육청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들을 보면 위 학교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의 명예와 학생들의 진학문제에 있어 학교안의 성폭력 사건은 때로는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학교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경찰에 형사고소가 된 다음에야 겨우 해당교사를 직위해제 시켰다.

학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성희롱 추가 피해 사실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학교 측에서 의뢰한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객관적인가도 의문이다.

서울 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그 결과는 피해자 측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 피해자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가 교장에게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고소한 피해자 외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하였다.

담당 경찰 또한 추가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 측 사선변호사가 빠르게 움직인 탓에 학교 측과 경찰의 말은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었다.

피해자 측 아이들은 변호사에게 전수조사 익명으로 적으라고 할 때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자신들을 포함하여 추가피해 사실을 분명히 적었다고 이야기 했고,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 선생님이 가슴을 지시봉으로 쿡쿡 찌르고, 외모비하 발언을 하거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해 주었다.

이 진술을 녹취해서 학교 측과 경찰에게 들려주었더니 그 후에야 경찰은 피해자 측에 협조하기 시작했고, 다행스럽게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그날 이후,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가 피해자인지 알아보려고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고, 오히려 하는 피해학생에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니?”, “네가 좀 예민한 것 아니니?”, “선생님이 감옥가면 좋겠니?”라면서 사건 접수로 인한 학교 안의 모든 불편한 분위기들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면서 같은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교사들로부터 소외시키기 시작했다.

또한 교사들은 가해 교사가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하였고, 심지어는 가해 교사가 일부 잘못을 시인하였음에도 가해 교사를 용서해 달라면서 연대하여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가해 학교 교사들에게는 피해 학생은 보이지 않고, 가해 교사의 안타까운 상황만 보였나 보다.

그리하여 이 학교는 가해교사에게 직위해제만 하였을 뿐 파면이나 해임 등의 처분은 하지 않았다.

업무에서 일시 배제만 시켰을 뿐 법정 다툼 끝에 행여 경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학교로 복귀시킬 생각인 것이다.

2. 피해를 입었어도 피해자로 나설 수 없는 무언의 압박

실제 피해를 입고 적극적으로 강한 처벌을 원하는 사람들은 졸업생들까지 자그마치 50여명이 넘었다. 이중 실명을 거론하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 학생은 10여명이었다. 그러나 이들 또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학교 시험일장과 고교 진학 시 학교 측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 당사자로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추가고소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최초 신고를 했던 피해자 1외에, 2,3의 피해자는 없었다.

3. 숨 방망이같은 처벌, 반성하지 않은 몸으로 멀쩡하게 교단에 다시 서는 가해교사들

서울 ○○○고, 서울 □□여중, 전북 △△여중, 최근 서울 노원의 ▽▽여고까지 학교에서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과연 어떤 처분을 받고 있을까.

학교 측의 미온적인 대응도 있지만 때로는 학교 측이 나서서 적극 대처한 경우도 있다.

2016. 4월 서울 ○○구 ☆☆ ☆☆☆고 학생들은 학교 안 건의함에 쪽지 형식의 익명투서를 넣었다.

체육교사가 성희롱과 욕설, 폭언을 계속하니 학교가 이를 바로 잡아 달라는 내용이 건의함에서 14건 발견되었다. 이후 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자 피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익명의 피해 진술서에는 가해 교사가 “수업중 성적인 발언을 한 뒤, 한 학생에게 ‘너 젖었지’라고 말했다.”, “학생을 무릎위에 앉혔다.”, “반강제로 19금 성인 만화를 보여줬다.”, “잔디에 누워 있는 학생위에 올라탔다” 또한 실명이 피해 진술서에는 “입을 벌리고 자고 있는데, 얼굴 사진을 찍어 갔다”, “수업 중 성적인 발언을 했다.”, “체육시간에 다른 학생을 깔고 앉았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사실을 보거나 알게 된 교사들도 연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해 주었다.

사안이 이러하였음에도 사법기관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는 이 가해 교사에게 학교 측의 해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들은 대부분 이렇게 혐의 없음이나 감형처분을 받았다.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편이 되어주는커녕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서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느 누가 미투를 외칠 수 있을 것인가 말이다.

미투에 응답할 정책, 제언들

1. 피해자를 불안케 하지 마라

일단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가 궁금해 하고 요청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학교 측과 수사기관은 모든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는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피해자와 학교 측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전수조사 기관역시 학교 측과 경찰관이 지정하는 전수기관 말고, 전문기관 안에서 피해자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결과를 낳게 할 것이다.

2. 학생과 교사 간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

어떤 관계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

무엇이 성희롱인지 알게 해야 하고, 성희롱을 보거나 알게 될 때, 때로는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게 하여 피해사실이 은폐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성희롱예방 및 방지를 위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며, 이 매뉴얼 상에는 사안 처리 시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며, 동료교사를 비호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이 사건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 학교기관 평가나 학교장의 평가방식을 개선하라

현재 학교의 평가 내지 학교장 등에 대한 평가 방식은 반드시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되면 학교 측에서는 학교의 명예 또는 이로 인한 승진 등에 있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한 나머지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에 문제가 발생할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시 얼마나 피해자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 어떤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지, 그러한 노력들을 가산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4.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라

학교 안 가해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같은 미온적인 처분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다.

징계에 대한 수위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도 없어 각 학교마다 다르게 처분되기도 한다.

성희롱은 미래의 인재가 될 아이들의 꿈을, 믿음을 저 버리는 행위이다.

아이들이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고백할 때, 가해자의 중한 처벌이 때로는 교육기관의 든직한 믿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 진학 시 추천, 혹은 대입 전형 때 피해자 또는 협조자에게 혜택 부여

미투는 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미투로 인한 학교 변화는 없었고 이로 인해 아이들은 더 이상 미투를 외치지 않겠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입을 막는 무언가의 악한 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진학문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그런 우려 때문이다.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용기 있게 미투를 고백하는 학생들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나쁜 사람으로 전락된다.

이 때문에 학교 측은 진학 시 추천서를 써주지 않고, 이 때문에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학교 측의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투를 고백한 피해자나 협조자는 그러한 사실로 인한 추천이 우선시 되고, 대입입시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특별전형으로 뽑는 제도 등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할 듯 싶다.

토론 3

윤세진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

1. 정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1) 추진 경과

-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7.11, 고용부·여가부),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17.11, 여가부 등),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18.2, 여가부·인사처 등),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8.3, 여가·법무·문체·고용 등),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대책('18.3, 법무부), 이주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18.4, 여가·고용 등) 발표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운영('18.3.8~, 위원장: 여가부 장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18.3.30~, 단장: 여가부 차관) 운영
- 40개 정부기관(부처청) 중 27개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 11개 기관에서 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 조사위원회 등을 운영
- *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위원장: 최영애) 등

2) 대책의 주요 내용

- 특별점검 및 사회 각분야 실태조사
 - 사회 전방위 분야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추진

구분		내용	기간
공공부문		관계부처 합동 온·오프라인 특별점검	3.12~
문화·예술부문		성희롱·성폭력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단 운영	3.12.~6.19.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특별조사단 연계	3월~
교육 부문	초·중·고	특별조사(언론보도 등 은폐·축소 우려 사안)	3.5.~
	대학	실태조사(모든 대학의 신고센터 운영현황)	4.1.~
민간(직장)부문		근로감독시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점검 상시 30인 이상 기업 성희롱 실태조사(온라인 표본조사 실시)	4.17~

• 피해자 신고 및 상담지원

- 부문별 특별신고센터 운영, 여가부, 노동부, 교육부, 문체부, 인사처 등 부처별로 특별신고센터를 운영(3월~)해 총 797건이 접수(4.24. 기준)
- 최초 신고접수 기관에서 분야별 주관기관에 사건 연계
- 심리상담, 법률·의료서비스 지원 등 전문기관 연계 지원
 - (노동부) 권역별로 민간단체인 고용평등상담실과 연계, 근로감독관이 민간사업장 행정지도 시 필요할 경우 컨설팅 위원단(여가부) 동행
 - (교육부, 인사처) 피해자 긴급지원 시 상담자가 1366을 통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또는 성폭력 상담소 연계
 - (경찰청) 수사의뢰 시, 피해자 주소지 등 관할 경찰서로 연계

•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 피해 사후 지원(상담, 법률지원 등) 책임자로 미투피해자 보호관(915명) 지정·운영
- 악의·비난성 댓글 게시자에 대해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 후 적극적 내·수사 착수
-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적극 활용(대검 일선청 지시 예정, 4월)
- 피해자 보호 강화: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 확대(1회당 15만원 한도 → 20만원 한도), 공소시효 만료사건에 대해서도 의료비·심리치료 지원, 민·형사상 무료 법률 지원 강화(예산확충 16억 → 23억, 7억 증)

• 가해자 제재 및 처벌 강화

- 공무원 성폭력 범죄 제재 강화 및 징계절차 개선: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벌금형(300만원)까지 당연 퇴직토록 제재 강화(국가공무원법 개정), 국가공무원 임용결

격 사유 확대 방침을 지방직·특정직 공무원(경찰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추진, 특정직 공무원도 성희롱 가해행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징계기준 정비(지방공무원징계규칙,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처벌 강화: 사건 은폐·방임 등과 관련된 단체의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마련 추진(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검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의료분야 제재 강화: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부적정 대응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전공의법 개정), 의료인 간 성폭력 금지 및 제재 규정 마련(의료법 개정)
- 예방 및 인식개선, 추진체계 강화
 - 대상별·계기별 위드유(#with you) 캠페인 실시, 미투 근본 해결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콘텐츠 제작 및 성평등 교육 확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모바일 콘텐츠 제작·보급, 문화예술계 폭력예방 교육 강화 위해 문화예술계 맞춤형 강사양성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개발

2.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2차 범정부 협의회 자료 참조, 대학제외)

1) 추진 경과

- 신고센터 확대·개편('18.3.9~) 및 특별 현장점검 강화
 - 교육부 교원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확대·개편
 - 교육부, 서울 문영여중(3.14), 명지전문대(3.5~7), 서울예대(3.27~30) 현장점검 등 사안 발생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구성·운영(회의 개최: 4.3, 4.27)
 -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전문적 자문을 위해 여성·법조·의료 및 학부모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10인 위촉
-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현장의 대응 촉구
 - 전국 교육청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안내·확산
 - *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3.6), 부교육감 회의(4.3)
 - 학교 성폭력사안 발생시 신속한 대응·해결을 위해 교육청별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부교육감) 구성·운영

2) 향후 추진 계획

-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법령·제도 개선 추진
 - 교육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아동·청소년 성범죄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안내('18.4월~)
 - *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3.30)
 - 징계위원회 다양성 제고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 총수 및 외부위원 수 확대
 - * (예) (위원 수) 5~9명 → 7~9명, (외부위원 수) 1명 이상 → 3명 이상
 - *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

-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
 -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도교육청의 성비위 예방 및 조치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18.4월말~6월)
 - * 성비위 관련 예방교육, 신고처리 대응매뉴얼 준수, 성범죄 고의 은폐 미대응자 징계처분 여부 등 점검
 - 언론, 신고센터 모니터링을 통해 비위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 지속 추진

- 성폭력 예방 및 인권·양성평등 교육 강화
 - 초·중등 학교·교육청의 교직원 대상 전문연수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 갱신·보급
 -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다양한 성역할 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학교현장 계기교육 실시('18.상)
 - 성폭력 피해 대응 위주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 및 양성평등과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한 성교육표준안 개편 방안 마련('18.하)

3. 마무리 : '스쿨 미투' 관련 추가 과제

토론 4

윤명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I. 추진 배경

1.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2017.1.4.)
- 「2018학년도 평화로운 학교 운영 계획」(2018.2.19.)

2. 필요성

-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2017.11.) 발표
-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성희롱 방지와 인식 개선 강조

〈제49회 국무회의('17.11.21.)시 대통령 말씀〉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인식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며,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

- 언론 등에서 학교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임

주요 언론 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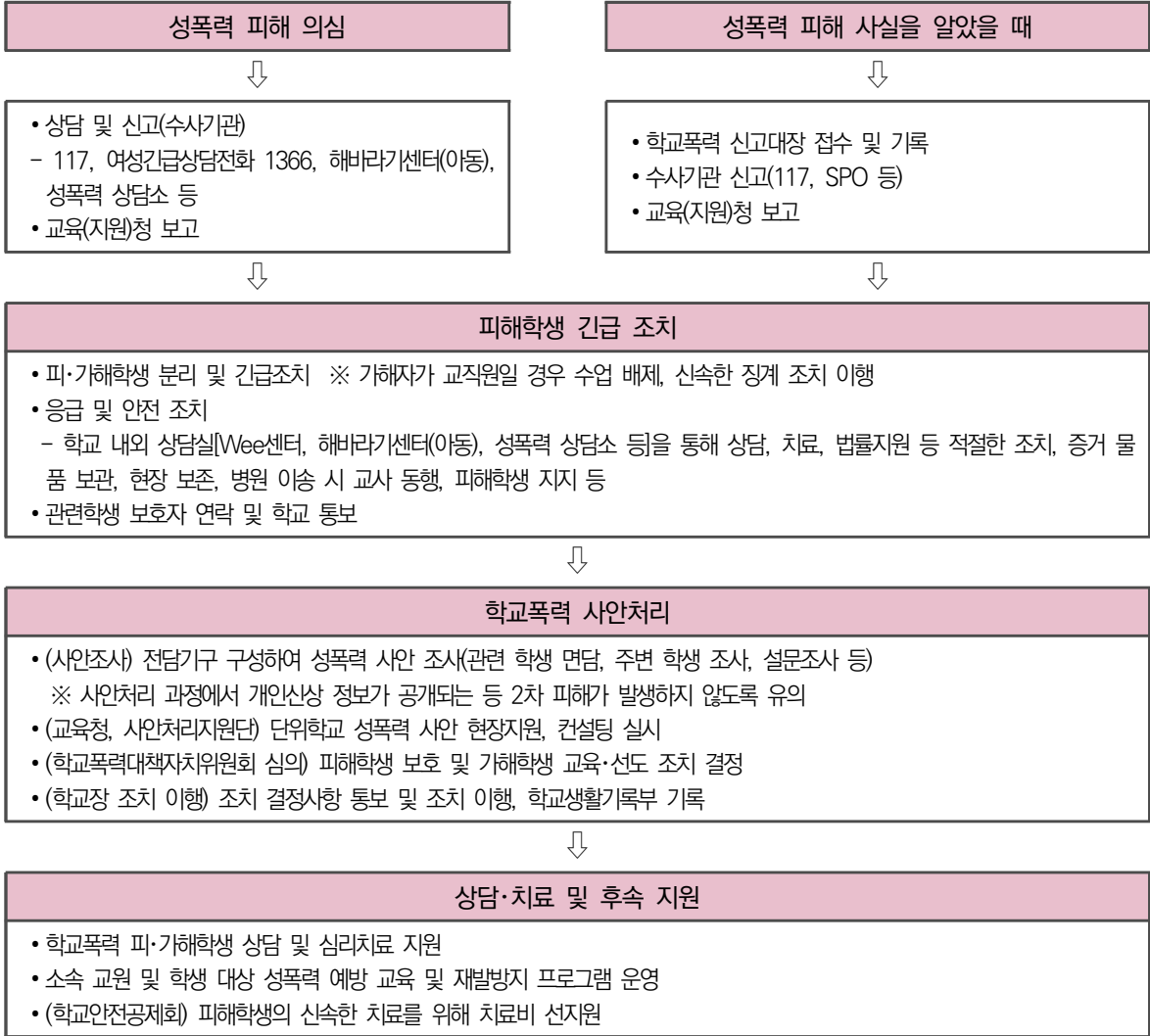
- 교사도 학생들도 손 위에 전라 여성...속수무책 스마트폰 음란물(연합뉴스, '17. 4.)
- '성추행' 신고에도 교단 서는 교사(SBS, '17. 6)
- 부안·여주·부산... 계속되는 '성추행 교사' 파문(국민일보, '17. 8.)
- '체육복이 단서' 학생 성추행 혐의 교사 구속문(MBN, '17. 8.)
- 대낮에 고등학교 침입해 여학생 성추행한 20대 남성 검거(서울경제, '17. 8.)
- 동성애 옹호? 성평등 교육?...페미니즘 교사 논란(서울신문, '17. 9)
- "교실은 안전한가" 학교 성폭력 초등생 가해학생수 7.4배 증가 충격(국민일보, '17. 10)
- 학교 성폭력 매년 증가... 처벌은 갈수록 약해져(한국일보, '17. 10)
- 재미로 '섹스팅'? 성폭력 무감각한 청소년(경향신문, '17. 12.)
- 웃고름 매준다며 가슴 만져...학생 성추행 교사 구속(한겨레, '18. 1.)
- 성폭력 폭로 줄줄이...터져나온 미투(#MeToo) 번지는 분노(동아일보, '18. 2)

- 최근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및 성폭력 고발이 잇따르고 있는 등 학교 내 성폭력 방지 및 성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1. 학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흐름도

예방 교육		
학 생	학부모	교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3시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학기별 1회) • 학부모 상담주간 활용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예방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연 1회, 각 1시간) • 성교육 담당 교사 및 성고충 상담원 연수

[성폭력 신고·상담·보호·치료 절차]



□ 학교폭력 예방 활동

-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올바른 또래문화 형성을 위한 어깨동무학교 프로그램 운영
- 회복적 관계 회복을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모델학교 운영
- 언어문화개선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선도학교 운영(언어문화개선 35교, 사이버폭력 17교)

□ **성교육 추진**

- 모든 학생 15시간 이상 성교육(성폭력예방 3시간 포함) 의무 실시
-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성교육 담당 교사** 성교육 직무연수 실시('17년 6월, 1,304명)
- 서울시 연결(시립 중랑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학생 175교, 9,806명, 교사 2,237명 성교육, 청소년 동아리 운영 106교)

□ **성폭력 신고 및 대응 체계 구축**

- 성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한 **학교성폭력온라인신고센터 설치**('17년 3월)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 시범 배치(11명)
- 학교폭력사안처리지원단 컨설팅 지원(4권역 11개청, 총 99회 지원)
-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17년 4, 9월)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전문성 향상 연수 실시('17년 상하반기)
 -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교감, 책임교사), 외부위원(SPO, 법조인 등) 대상
- 학교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상담 역량 강화(751교)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상담사 배치(12명)
- 위(Wee) 센터 17개소 운영(직영 15개소, 위탁 2개소)

□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안전 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6건, 성범죄경력조회 미 실시 3건)
-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166명)
- 고화소 CCTV 설치 지원(1347교, 32,233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지원(11교)
- 학생보호인력 배치(학교보안관 1,188명, 배움터지킴이 912명)

2. 한 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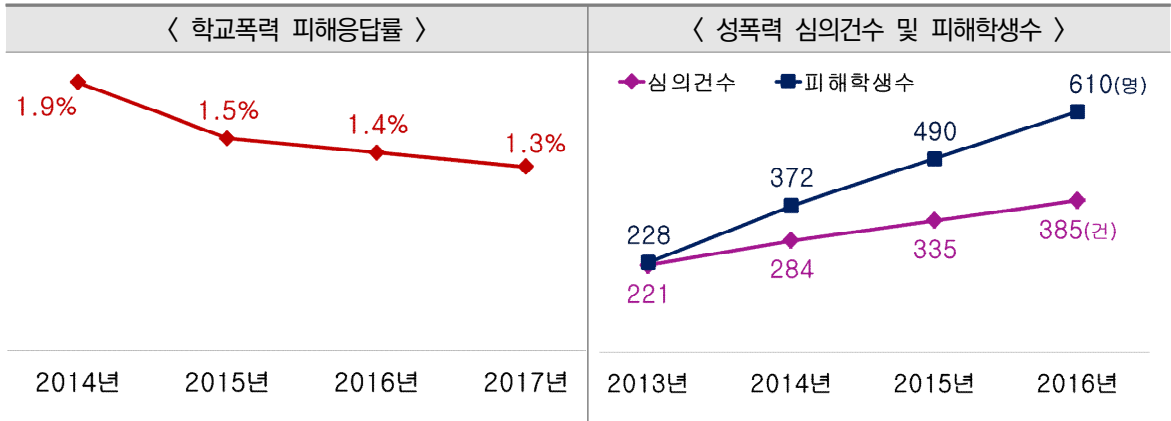
□ 학교폭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증가 추세

- 학교폭력은 지속적인 근절노력으로 감소추세*이나, 성 사안 관련 자치위원회 심의건수**와 피해학생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서울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14.1차) 1.9% → ('15.1차) 1.5% → ('16.1차) 1.4% → ('17.1차) 1.3%

** 자치위원회(성폭력) 심의건수: ('13) 221건 → ('14) 284건 → ('15) 335건 → ('16) 385건 → ('17.8) 293건

*** 피해학생 수: ('13) 228명 → ('14) 372명 → ('15) 490명 → ('16) 610명 → ('17.8) 47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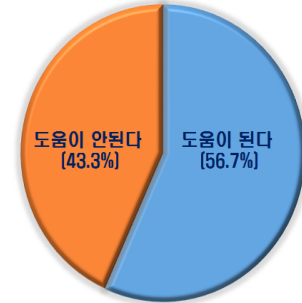


□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 미흡

-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참여 학생의 56.7%만이 학교 성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대답함
 - 성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임(54.2%)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들어서 지루함(53.2%), ▲알고 싶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음(35.6%), ▲전체 강의여서 집중하기 힘들(19.0%)으로 나타남

〈 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경험 〉

구 분	매우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응답률	11.4%	45.3%	29.0%	14.3%



자료출처 : 2017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의 성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
[중학교 3학년 대상, 총 671명 참여(여학생 49.1%, 남학생 50.9%)]

- 현재의 성교육은 **충분한 시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성적 문제 예방 중심**으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 필요**

□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부족**

- 성폭력 사안처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과정 및 조치의 **신뢰성, 공정성**에 대한 **이의제기 증가***
*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성폭력 심의건수: (14) 9건 → (15) 15건 → (16) 10건 → (17) 19건
- **학교 내 성폭력에 적용되는 법률만** 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등 5개 이상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안**의 경우 **학생 보호 및 선도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며, **형사적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및 관련 특별법*** 등을 적용함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안은 그 **특수성 및 관계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나, 성폭력 담당 교원 및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부족**

□ **학교 안전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 필요**

- 학교 CCTV는 양적으로 확충되었으나 **고화질 CCTV 비율이 낮고(50만 화소 이하 저화질 93%), 실시간 관제 등 통합관제시스템(25개 자치구 중 8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함**
- 학생보호인력 배치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학교 무단 침입이 발생하고 있어, 위해 요인으로부터 학교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학생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 마련 필요**

3. 학교 성폭력 증가 요인

- **사이버 공간 확장**으로 학생을 성폭력에 노출시키는 **유해환경**(음란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증가
- 최근 학교폭력의 유형이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으로 범위가 커지면서 **성폭력과 결합**(언어폭력+성폭력, 사이버폭력+성폭력)하여 나타남
- **디지털 성폭력**(카메라 등 촬영, SNS 및 단톡방을 통한 성희롱, 음란사진 전송) 증가로 **성폭력 건수 및 피·가해자 다수화**
- 또래 간 놀이(교제)과정에서 발생한 **성적 표현, 농담, 언어적 장난 및 갈등까지를 모두 성폭력으로 신고**
※ 섹드립(아한애기), 패드립(부모욕), 여성비하표현 남성비하표현, 성소수자 비하 표현 등
-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잔존, 성적인 문제에 경직되어 있는 교육환경, 성인권 및 성감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

4. 교사에 의한 학교 성폭력 증가 진단(실태보고서 중심으로)

- **교사에 의한 성희롱** 증가는 이전에 묵인되었던 사안들이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의식의 상승과 **#MeToo**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등으로 표면으로 드러남
- **1학년 학생대상** 교사 성희롱수치가 높게나오는 것은 **성희롱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면 무감각으로 대응한 결과들이 있음**, 2,3학년은 포기하거나 익숙해져버림
- **교과목교사의 수업중 성희롱** 높은 수치는 성폭력 일어나는 학교 공통점**사립학교 연령대가 많은 남.여교사인 경우가 높음. 시대의 변화에 둔감하고 외부의 자극요인이 적음**
- **학생신고상당** 대상이 친구가 많은 이유로 학교의 다른 인권침해사항도 친구에게 말하는 사항이 높음. **성교육의 한계와 인권감수성이 낮은 학교 분위기**
- **성폭력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성교육의 현실성이 떨어짐. **성교육 표준안의 추상성과 비현실성, 권위주의적 학교문화와 불이익에대한 두려움**
- **교사의 성폭력발생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요구이지만 실질적으로 성비위 교사가 복직이 가능한 구조, 성고충상담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있음**
- **성폭력 학교발생구조**는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학교문화와 학교규칙이 강한 특히 **사립여학교**에서 최근 발생건수가 높음. 교사의 권한이 클수록 교사에 의한 성폭력과 학생인권침해 처벌, 언어폭력이 많이 발생함
- **학교문화를 개선하기위해서 학생대상 성교육과 더불어 교사대상 인권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강화 되어야함**
- **교육부 학교폭력 전수조사시 항목에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기재하도록 해야함.** 현재는 학생간 성폭력사항만 기재하고 교사에 의한 성범죄는 교원정책과로 분류되어 충분히 인지 되지 못하고 있음. 여러번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않고 있음

토론 5

박현이 (아해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2006년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신고의무제도가 발효된 이후 학교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는 성폭력 피해 및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서울시 모 공립고교 교사 5명에 의한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 사례나 최근 스쿨미투에서 보여주듯이 학교 현장의 현실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을 방치하고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해 교사의 위계와 권력에 의해 피해 학생들이 보고조차 못하기도 하고, 보고를 해도 학교에서는 무성의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은 공식 통계보다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 교사보다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16년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년 6개월간 총 258명의 초중고 교원이 성희롱, 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드러난 통계 자료에 의한 산출이고 드러나지 않은 사안까지 포함하였을 때는 교사에 의한 학교성폭력 사안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교사에 의한 성비위 사건 중 성매매, 일반인 대상 성추행을 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전체 80% 이상이고 교직원 대상 성폭력 사안도 31건으로 전체 8%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 아해! 성교육 및 성상담 사례를 통해서 본 교직원에 의한 학생 성폭력

아해!청소년성문화센터 성교육 체험관에 방문한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자신이 경험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피해 후유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상담 의뢰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 아해! 체험형 성교육 과정에서 드러난 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례

〈성이란 무엇인가〉 성교육 영상물을 보고 난 후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말해보라고 하니, 학생들이 ‘교

사의 성추행 장면'을 언급하면서 “우리 담임이랑 똑같아요”라는 것이었다.

또 여중생들이 <데이트할 때의 애정 표현에 관한 선호도>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애정 표현’으로 ‘무릎 위에 앉기’를 체크하였다. 그동안 담임교사가 여학생들을 무릎 위에 수시로 앉히기도 하고, 교사의 팔이 여학생의 가슴 부위에 닿거나 교사가 학생의 목을 껴안는 행동 등으로 학생들은 소름이 끼쳤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아하!센터 성교육 체험관에서 남중생들이 성기를 치는 장난을 해서 그런 행동은 성폭력이고, 상대의 소중한 부분을 함부로 장난쳐서는 안된다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도 그러는데요.”라고 반응하였다. 교사가 장난이나 훈육 차원으로 성기나 엉덩이를 치거나 건드리는 행동을 한다고 했고, 교사의 개념없는 성추행 행동을 학생들이 모방해서 또래간 성폭력으로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2) 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피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아하!센터로 의뢰된 청소년 피해자들의 경우, 성폭력 피해 트라우마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 청소년들은 ‘가해 교사와 마주칠까 봐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가해 교사를 만나면 가슴이 팍 막히고 머리가 쩡하면서 답답하다, 심지어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자신의 피해 사실보다는 학교 생활 및 고입지원에 문제가 될까봐 현재 자신의 피해사실을 억압하는 학생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후 후유증이 남성 및 스킨십 기피 증상 등으로 표출될 수도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피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교사로부터의 성폭력은 학생들에게 주는 충격과 피해 후유증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3) 지속적인 피해 가능성의 문제

성폭력 가해 교사들은 개인상담 및 진로지도, 마사지, 친근감 등으로 친절을 가장해서 접근하거나 경제적으로 또는 양육자의 돌봄이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성폭력을 시도한다. 여러 학생들에게 동일한 상황에서 반복 피해를 주는 형태로 가해 교사의 계획적이고 성폭력적인 의도가 드러난다. 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힘과 권력이 있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을 띠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해 교사들을 방치할 경우,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다른 학생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가해 교사의 위계와 권력에 의해 피해 학생들이 보고조차 못하기도 하고, 보고를 해도 학교에서는 무성의하게 대응하기도 한다.

※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에 대해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이유

- 1) 교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의해 학생의 대응방식이 매우 소극적이다. 배우는 학생의 입장, 연령에 있어서 어린 입장, 이성 선생님에 대한 학생의 입장은 위계에 의한 권력에의 순종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 2) 교사의 성폭력이 교육의 형식을 빌어 많이 발생하므로 학생의 부정적인 느낌을 밖으로 표출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 3) 교육으로 포장되어 교사에 의해 주입되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성폭력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갈등상태에 놓이게 때문에 소극적이다.

4) 학교 교사에 의한 성폭력 대응

아하! 센터 성교육 도중 발견한 사건들의 경우,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가해 교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상담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가해 교사 본인의 행동이 성폭력임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보고한 피해 상황을 학교와 전문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이 사회가 성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 믿을만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한다.

2. 학교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 내 안전망 구축 방안

1) 학교 내 성폭력 안전망 구축을 위한 체계 및 제도를 마련한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징계 처리 절차, 사안 해결을 위한 담당교사 선정, 성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마련한다.

2) 학교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사안 담당교사를 정하고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또한 사안 담당교사와 위원들이 사전에 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안 처리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3) 평소 성관련 자문 및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한다.

성교육 실시와 성폭력 피·가해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전문가를 섭외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4)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신고하는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한 학교 내 체계 및 제도를 만들어서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에게 주기적으로 공지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 내 성폭력 안전망 체계 및 제도(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성폭력 발생 시 신고 방법, 피해자 지원 및 보호 제도, 가해자에 대한 교육 및 징계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안내한다.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어른, 즉 교사, 학부모, 또는 성폭력 사안 담당교사(담당 교사가 누구인지 사전에 교육을 통해 알려줌)와 의논하도록 지속적으로 공지한다.

5)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동료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혼란스러움과 충격을 받은 동료교사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 도모와 성폭력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에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열정적으로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를 했거나 인기교사로 소문이 나 있는 경우 동료교사들은 가해 교사를 성희롱 가해자로 받아들이는데 혼란스러워하기도 한다. 학교 교사 대상으로 해당 교사의 성폭력 행위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점과 피해 학생들이 여러 명인 경우가 많고, 학생들에게 미친 피해 후유증과 지속적인 피해 발생 우려 등에 대한 이해와 성폭력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 6) 가해 교사의 행동이 상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징계 조치뿐만 아니라 가해 교사가 전문 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7) 성폭력 사안을 보고했던 반의 학생들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폭력 사안이 사건화 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성폭력 피해 사례 보고한 것에 대한 격려와 그 의미, 향후 학교의 조치 안내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8)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상담 창구를 안내해주고 비밀 보장 및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약속, 학교 내 안전한 성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3. 학교 내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1) 교직원의 성평등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제언

- 교대와 사범대학, 교원임용연수과정, 일정 연수, 교감·교장 연수 등에서 반드시 성평등 인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예방 지침, 발생시 처리과정, 가해자에 조치 방안, 성 인권 강화를 위한 연수를 필수 과목으로 포함하도록 해야함
- 학교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강화 필요: 성폭력 피해 발생시 상담 신고할 수 있도록 학교내 외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 중요성 인식

2) 협력체계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 학교성폭력 사안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처리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 필요
- 학교성폭력 사안 발생 초동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청별로 성교육 및 성폭력 상담 연계 유관기관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조력 체계 구축 필요
- 가해 행위 교사에 대한 교육 및 상담치료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조체계를 통해 대안 마련 필요

토론 6

노형미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1. 들어가며

토론에 앞서, 정성을 들여 작성하고 분석하신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를 읽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평소 형사 사건을 주로 다루면서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범죄에도 잘못된 성인식의 만연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왔고, 초기 인성이 형성되는 교육 현장에서의 성 관련 교육 및 문제 해결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하셨던 분들이 교사에 의한 성희롱 현황 및 문제점과 그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기에 저는 평소 업무 경험에 비추어 보아 몇 가지 보완책을 언급하는 선에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크게는 예방과 조사과정 상의 문제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2. 교사에 의한 성희롱 예방 방안 관련

가. 전체에 대한 인식 조사

발표자께서는 성희롱 방지 정책의 하나로 실태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문제가 어느 정도 범위 및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위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에 초중고생 뿐만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가까운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제안합니다. 단 그 내용은 피해 상황을 조사하는 것과 같은 “교사로부터의 피해 경험이 있는지, 어떠한 피해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가 아닌 일반적인 성 인식 조사를 위주로 즉 -교사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아래 예와 같은 행위 중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성희롱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이유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는 학생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하는 설문조사에서 ‘교사’로부터의 성희롱 상황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어 질문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가해자로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지게 할 수 있고, 교사의 사기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수 조사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인식 조사 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개별 피해조사는 제안하신 바와 같이 상담교사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설문조사의 실익은 학생 및 교사들이 어느 정도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각 대상별 인식 간의 간극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가이드라인 제작이나 교육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대대적인 성 인식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하의 효과 또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즉 설문지를 통하여 내가 한 행동 또는 내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행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의식 교육 방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 시간 및 강도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세부적인 교육방식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의 중심이 교사의 성희롱 예방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성 인지 선진화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예방이라는 교육명을 부각할 경우, 교사 측에서 교육에 저항감을 가지게 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교육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을 각성의 계기로 삼은 교사들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조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학생 간의 성희롱은 고착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교사가 자기 자신이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의 성인지 미비를 목격하고도 묵과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라며 방기할 경우, 가해의 동조자로서 교사가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가정하여 전반적인 성 인지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를 원형으로 하는 학교 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지위 체험, 즉 역할극을 제안합니다. 다수의 교사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은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방향이 옳은 것이다” 라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보다 교사에 의한 성희롱 조사 상황을 제공하고 조별로 3가지 역할을 나누어 판단자-가해자-피해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체험을 공유하는 방식이 더 오래, 강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3. 교사에 의한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

가. 학생 보호 방안

조사하신 내용에 의하면 학생들이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교 영역 뿐만 아니라 일반 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피해자인 이유는 무엇인지 찾으려 하는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접수 및 대응 절차를 학교 외의 독립기구 주도 하에 하는 절차를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학생과 신고접수자 간의 소통 창구 및 내용은 조사에 필요한 범위 외에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사실확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학교 관계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가해 교사의 반론이나 사과, 향후 조치에 대한 의견 또한 학교 내에서가 아닌 신고접수자이자 판단자인 외부 창구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공정하고 비밀보장이 되는 외부의 창구가 존재할 경우 최초의 신고에 대한 가해 교사의 소명 또는 재발방지 약속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사건화가 될 경우 교사는 직위유지 문제 및 명예감정 손상을 이유로 필요 이상의 격렬한 반응 및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식이 합리적인 해결을 가져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조사 방안

교사의 성희롱에 대한 처분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의 지위와 명예직이자 평생 직장으로 생각되는 교사의 지위가 대립됩니다. 형벌을 수반하는 형사법 절차와 같을 수는 없지만, 가해자 또한 자신이 잘못된 행위에 상응하는 정도의 적절한 처분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위한 조사 절차는 공정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성희롱심의위원회는 내부 조직인데다 구성원 중 조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중립적인 사람이나 법률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 조직이라는 점은 교사 쪽에 기울어진 의견청취 및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단점, 조사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 차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충분히 교육되지 않은 위원들이 사건 개요만 보고 피해 학생에게 객관적인 질문 이전에 “힘들었지?”로 사실청취를 시작하거나, 강하게 어필하는 일방 당사자에게 기울어진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관련 조사를 할 때 그 구성원 중 조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치며

우리나라는 사회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편이며 최근에는 윤리영역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영역의 폐쇄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모습이 발견되며, 그 원인은 오랜 시간 문제시 되지 않았던 일상적인 가해행위가 반성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해행위를 사후적으로 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적 조치, 즉 성에 관한 사회 구성원 전반의 인식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위에 있는 교사의 성 인지의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들 또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문제시 하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

발 행 일 2018년 5월
발 행 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발 행 처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15층
전화 : 02) 2125-9642
팩스 : 02) 2125-0929 (아동청소년인권과)
<http://www.humanrights.go.kr>

I S B N 978-89-6114-623-4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무단 변경, 복제·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